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편람

2025. 4.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평가 개요 ····· 1

1. 목적 및 근거 ····· 1
2. 대상기관 ····· 1
3. 평가항목 ····· 1
4. 수행 절차 및 일정 ····· 2
5. 2025년 개편 추진방향 ····· 4
6. 평가지표의 구성 ····· 5
7. 평가결과의 활용 ····· 6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 7

1. 개방·활용 영역 ····· 7
2. 품질 영역 ····· 24
3. 분석·활용 영역 ····· 45
4. 공유 영역 ····· 62
5. 관리체계 영역 ····· 78

[첨부]

1. 2025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 84
2. 정성평가 작성양식 ····· 90
3. 평가지표별 문의처 ····· 113

• • ’2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4) •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table>
<tr><th>영역</th><th>2024년</th><th>→</th><th>2025년</th></tr>
<tr><td rowspan="9">개방·활용
(45)
↓
(48)</td><td>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5)</td><td>(유지)</td><td>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0)</td></tr>
<tr><td></td><td>신규</td><td>1-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10) * 정성</td></tr>
<tr><td>1-②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3)</td><td rowspan="3">조정</td><td rowspan="3">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8)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td><td>2</td></tr><tr><td>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td><td>4</td></tr><tr><td>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td><td>2</td></tr><tr><td>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td><td>(-1/건)</td></tr><tr><td>추가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td><td>(-1/건)</td></tr></table></td></tr>
<tr><td>1-③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6)</td></tr>
<tr><td>1-④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3)</td></tr>
<tr><td>1-⑤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18) * 정성</td><td>(유지)</td><td rowspan="4">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20) * 정량+정성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추가(정량)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td><td>5</td></tr><tr><td>공공데이터 민간·공공 활용 성과</td><td>5</td></tr><tr><td>공공데이터 활용 지원</td><td>10</td></tr></table></td></tr>
<tr><td>1-⑤-1 활용도 낮은 개방데이터의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4)</td><td>폐지</td></tr>
<tr><td>1-⑤-2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우수사례(6)</td><td rowspan="2">조정</td></tr>
<tr><td>1-⑤-3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타 시책 추진 노력(8)</td></tr>
<tr><td>1-⑥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td><td>조정</td><td>1-③ 지표와 통합</td></tr>
<tr><td></td><td>신규</td><td>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5점)</td></tr>
<tr><td colspan="4"></td></tr>
<tr><td rowspan="3">품질
(45)</td><td>4-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8)</td><td rowspan="3">(유지)</td><td>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7)</td></tr>
<tr><td>4-② 데이터 값 관리(18)</td><td>2-② 데이터 값 관리(18)</td></tr>
<tr><td>4-③ 진단결과 조치(9)</td><td>2-③ 진단결과 조치(10)</td></tr>
<tr><td colspan="4"></td></tr>
<tr><td rowspan="2">관리체계
(10)
↓
(7)</td><td>5-① 추진기반 조성(4)</td><td>(유지)</td><td>5-① 추진기반 조성(3)</td></tr>
<tr><td>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6)</td><td>(유지)</td><td>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4)</td></tr>
</table>

• • ’2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2/4) • •

1. 개방·활용 영역

○ ‘AI 친화 및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정성지표를 신설하여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기관별 **핵심데이터 개방 유도**

○ ‘가명정보 제공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지표를 신설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수요 공공데이터의 제공·개방***을 **활성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준수

○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지표를 신설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활용성 진단 수행** 및 **개선 유인**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목록의 키워드 및 설명이 사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는지(이해가능성 지표)를 중점적으로 평가

○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기관의 지원 노력을 중점적으로 평가**

* (기존) 웹·앱서비스 → (변경) 논문·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성과까지 확대

○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감점)’ 지표를 재도입하여 **국민·기업의 데이터 제공·개방 요청**에 따른 **행정·공공기관의 수용 확대**

2. 품질 영역

○ 기관의 **전체 DB**를 **1~3년 주기로 진단**할 수 있도록 평가대상 DB 선정

※ (기존) 기관 전체 DB 중 일부만을 점진적으로 확대(’22년 45%→’23년 50%→’24년 55%)·누적하여 평가

(변경) **다년간 평가받지 못한 DB의 품질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 비율’,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 평가기준 신설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지표의 **평가대상*** 및 **사업완료 단계 점검 범위**** **변경**

* (기존) 사전협의 대상 및 비대상 사업 → (변경) 사전협의 대상만 평가

** (기존) 제안요청서 DB분야 전체 요구사항의 산출물 → (변경) 사전협의 시 보완 의견을 받은 요구사항 산출물

○ ④-①-3(데이터 표준관리)의 **’24년 기준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연계·활용’ 세부기준**은 ④-①-5(연계관리)의 평가항목과 중복으로 **삭제**

• • ’2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3/4) •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table>
<tr><th>영역</th><th>2024년</th><th>→</th><th>2025년</th></tr>
<tr><td rowspan="11">분석·활용
(56)
↓
(50)</td><td>2-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10)</td><td>폐지</td><td></td></tr>
<tr><td>2-② 데이터 분석 실적(12)</td><td rowspan="2">통합</td><td rowspan="2">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25)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td><td>10</td></tr><tr><td>정성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td><td>15</td></tr></table></td></tr>
<tr><td>2-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10)</td></tr>
<tr><td>2-④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 및 실적(16)</td><td rowspan="3">3-③에 통합</td><td rowspan="3"></td></tr>
<tr><td>2-④-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2)</td></tr>
<tr><td>2-④-2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개선계획 수립(6) * 정성</td></tr>
<tr><td>2-④-3~5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참여(8)</td><td>조정</td><td>3-②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10)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전직원 대상 AI·데이터 교육 이수 실적</td><td>5</td></tr><tr><td>AI·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td><td>5</td></tr></table></td></tr>
<tr><td>2-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8) * 정성</td><td></td><td></td></tr>
<tr><td>2-⑤-1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5)</td><td>3-①에 통합</td><td></td></tr>
<tr><td>2-⑤-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타 시책 노력(3)</td><td>통합</td><td>3-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15)
* 정량+정성
<table><tr><th>세부 평가항목</th><th>배점</th></tr><tr><td>정량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td><td>2</td></tr><tr><td>추가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td><td>5</td></tr><tr><td>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td><td>8</td></tr></table></td></tr>
<tr><td rowspan="6">공유
(40)
↓
(45)</td><td>3-①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18)</td><td rowspan="2">통합</td><td rowspan="2">4-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이행률(14)</td></tr>
<tr><td>3-②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도(6)</td></tr>
<tr><td>3-③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6)</td><td>조정</td><td>4-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10) * 정성</td></tr>
<tr><td></td><td>신규</td><td>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6)</td></tr>
<tr><td>3-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10)</td><td>(유지)</td><td>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8)</td></tr>
<tr><td></td><td>신규</td><td>4-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7)</td></tr>
<tr><td rowspan="2">관리체계
(4)
↓
(5)</td><td>5-① 추진기반 조성(4)</td><td></td><td>5-① 추진기반 조성(3)</td></tr>
<tr><td></td><td>신규
(재도입)</td><td>5-② 기관장 추진 의지(2)</td></tr>
</table>

• • ’24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4/4) • •

1. 분석·활용 영역

○ **데이터 분석**의 **정책활용 성과(계획) 중심**으로 **평가**를 **전환**하기 위해 **양적** 평가에 **기반**한 **유사지표**를 **폐지 및 축소***하고 **질적 평가 강화****

* 시의성 약화 및 지표 간 중복을 고려, ‘2-①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실적’ 지표를 **폐지**하고, ‘2-② **데이터 분석** 실적’과 ‘2-③ 데이터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실적’ 지표를 **통합**

** ‘2-⑤-1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 지표를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지표로 **통합**하되, 분석결과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 등 **정책활용 노력·성과**를 **집중 평가**

○ 각 기관의 **AI 리터러시·역량 확보**를 위하여 ‘2-④-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 참여’ 지표에 **AI 교육 및 전문인력(자격증) 양성**을 **포함토록 확대** 적용

※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실무자·관리자별로 구분한 교육을 **전 직원 대상 교육으로 변경**

○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역량진단 및 개선, 문화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을 **신규 평가**

* ‘3-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의 세부 평가기준으로 반영

2. 공유 영역

○ 공유데이터의 **단순** 활용 **실적(건수)이 아닌 중요성·활용도** 등을 **고려**한 기관의 **공유데이터 발굴·공유 노력(정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강화**

※ 기존 ‘3-③ 공유데이터 활용 실적’ 정량지표를 **정성적**으로 평가

○ 범정부 **데이터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 기관 보유**데이터 수집 및 공유**데이터 **생성·관리**에 **필수**인 ‘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지표 **도입**

○ **AI 서비스 개발** 및 **AI 모델 학습**에 **활용**이 필요한 학습데이터 **조기 구축**을 위하여 **‘4-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지표 **신설**

※ **‘25년 평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관유형만 평가대상에 포함

○ **AI 시대·흐름**에 맞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4-⑥ 가명처리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을 지표로 **반영**

3. 관리체계 영역

○ **데이터기반행정 문화 조성** 및 **수준·역량** 제고를 위한 **기관장 관심·노력의 중요성**을 고려, ‘5-② **기관장 추진 의지**’ 지표 **재도입**

Ⅰ 평가 개요

1. 목적 및 근거

○ (목적) 행정·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관련 정책 개선** 및 **이행력 제고**

* 평가 실시 → 평가결과 기반의 정책 개선·보완 → 평가체계·지표에 정책 반영

○ (법적근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시행령 제21조

2. 대상기관

○ **총 685개*** **행정·공공기관** ※ [첨부1] 2025년 평가대상 기관

* 중앙(47), 광역(17), 기초(226), 공기업·준정부(88), 지방공기업(47), 기타공공(243), 시도교육청(17)

■ 평가대상 기관 확대경과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18년~) : '18년 287개(중앙·지자체) → '19년 520개(일부 공공기관 확대) → '20년 535개 → '21년 548개 → '22년 570개 → '23년 696개(전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확대) → **'24년 679개(평가대상 통일)**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21년~) : '21년 288개(중앙·지자체) → '22년 467개(일부 공공기관 확대) → '23년 464개 → **'24년 679개(전체 공공기관 및 시도교육청 확대, 평가대상 통일)**

3. 평가항목

○ **5개 영역, 18개 평가지표** ※ 가점지표(2개) 불포함

분야	영역	평가지표(안)
공공데이터 제공	개방·활용 (공)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
	품질 (공)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진단결과 조치
데이터기반 행정	분석·활용 (행)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및 실적
	공유 (행)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이행률,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
관리체계 (공)(행)		▲(공)(행) 추진기반 조성, ▲(공) 관련 교육 참여, ▲(행) 기관장 추진 의지

※ (공)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지표 / (행)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지표

4. 수행 절차 및 일정

일정	수행내용	수행주체
평가편람 확정 (4월)	• 평가체계·지표 개편 및 **평가편람 배포**	행정안전부
⇩		
실적등록 (정량 : ~9.30. /정성 : ~10.31.)	• 평가시스템에 **제출자료 업로드**	평가대상 기관
⇩		
평가실시(~12월)	• 전문기관(정량) 및 평가단(정성) **평가 수행** ※ 11월 중 이의신청 접수(정량지표만 해당)	평가단, 전문기관
⇩		
평가결과 공개 (~'26.3월)	• 관련 위원회 보고 후 **등급결과 대국민 공개(3월 예정)**	평가단, 행정안전부

○ **(진행순서)** 실적 등록 → 평가수행 → 이의신청 접수 → 최종점수 확정

※ **실적 인정기간** : '24.9.1~'25.10.31.**(14개월)** (단, 품질 영역은 '24.10.1.~'25.9.30.**(12개월)**)

- **(실적 등록)** 평가지표에 따라 **개별시스템**에서 실적이 **자동 집계**되거나 각 기관에서 **평가시스템***에 평가를 위한 **제출자료 업로드**

 * '목록등록관리시스템(all.data.go.kr)' > '기관 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 탭으로 이동 > 지표별 실적 등록

 ※ 일부 지표(공유, 개방 등)의 경우, 실적 인정기간 내 이행된 건 중 행정안전부 검토에 따른 보완을 실적 등록기간 중 완료한 건은 실적으로 인정

- **(평가 실시) 정량평가**는 **전문기관***, **정성평가**는 **평가단****이 수행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NIA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NIA(중앙), KLID(지방)

 ** 정보통신기술(ICT), 법, 경영, 행정 등 유관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

- **(이의신청 접수)** 실적 집계 오류 등 평가 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평가 오류 확인 및 정정

○ **(평가결과)** 각 기관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100점)'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100점)'에서 획득한 평가별 최종점수에 각각 등급 부여

※ '25년 평가는 본점수(100점)+가점(5점)으로 구성, 총 점수(105점) 기준으로 산정

- **(등급기준) 최우수(95점 이상 또는 전체 상위 5%),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40점 이상), 매우 미흡(40점 미만)**

■ (예시)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 88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70점을 획득한 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는 **'우수'** 등급,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는 **'보통'** 등급

- **(결과공개)** 각 평가의 **등급 결과**는 관련 위원회 보고 후 **대국민 공개**

※ 기관별 등급 결과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및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공공데이터 限) 보고 후 대국민 공개

<참고 : "품질"영역 평가 절차 및 일정>

일정		수행내용	수행주체
평가대상 DB 선정 (~6월)		• 기관 보유DB 현행화(~5월) • 평가대상 DB 선정(~6월)	평가대상 기관
⇩			
평가 진행	**기관별 자체평가** (6~9월)	• **기관별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수행** - 평가대상 DB의 오류진단 및 조치 - 평가지표에 대한 증빙자료 등록	평가대상 기관 ※ (NIA) 진단도구 제공 → (기관) 진단 수행
	상시 확인·점검 (6월~10월초)	• **기관별 자체진단·평가 결과 확인·점검** - 평가 완료된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점검 - 기관 자체평가 및 품질관리 활동 지원 - 기관 제출자료 검토 및 개선방향 가이드	공공데이터활용 지원센터(NIA)
⇩			
결과 확정 (~12월)		• **이의신청 접수(11월) 및 검토, 결과 확정**	품질 전문위원회, 행정안전부

① **(DB 현행화)** 기관 보유 DB 정보(DB명, 테이블·컬럼 등)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등 현행화(~5월)

② **(평가대상 DB선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DB 선정기준** (보유DB의 60% 이상)에 따라 평가대상 DB 선정(~6월)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관 보유 DB 검색 가능

** 선정기준 : 기관 보유DB의 60% 이상을 선정하되, 보유DB가 14개 이하인 기관은 전체DB, 15~25개인 기관은 15개 이상 DB를 선정, 그 외 기관은 아래표 참조

보유 DB	14개 이하	15~25개	26~74개	75개 이상
평가대상 DB	전체	15개 이상	16~44개 이상	45개 이상

※ DB 생성 및 수정·삭제 등 변경된 DB가 있으면, 보유DB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해야 함

③ **(자체평가)** 각 기관은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지표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검토·개선조치 등 지속적으로 보완 및 평가 증빙자료를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6~9월)

④ **(확인·점검)** 각 기관 자체평가 결과(제출자료)를 상시 확인·점검(6월~10월초, NIA)

⑤ **(결과확정)** 기관별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최종 평가결과 확정(~12월)

5. 2025년 개편 추진방향

◈ AI 시대의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행정·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지표**를 전환하여 **정부 효율성 제고**

□ 평가 개선 필요성

○ **공공 AX 전략** 및 공공데이터 **개방 전환계획** 등 **AI 시대적 흐름**과 정부 **핵심 정책의 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로 개선 필요

○ **변별력**이 낮은 **'3단계(우수-보통-미흡)' 평가**로 인해 **'우수'** 기관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성과·수준의 제한적 체감** 등 현실과 **괴리감** 존재

※ '24년(679개 기관) 평가결과 '우수' 비중 : 공데41%(278개), 데기행43.2%(293개)

○ 많은 양의 **실적·증빙 제출 요구**로 **피평가기관**의 **부담**은 큰 반면에 기관의 **노력·실체적 성과**는 충분히 측정되지 않는 한계

□ 개선 방향

○ **(정책환경 변화 반영)** AI 시대에 맞춰 **AI 친화·고가치데이터 개방, AI 리터러시, 가명정보 제공** 관련 지표* 도입으로 공공 AI 도입·활용 촉진

* 공데AI·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데기행AI·데이터 리터러시 및 교육, 데기행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등

※ **추진체계 마련**을 위한 **리터러시·인력·데이터** 등 관련 **지표**를 **우선적 도입**하고, **AI 활용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필요**지표**는 평가단과 검토하여 **단계적 설계·도입**

○ **(평가등급 세분화)**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변경*하고, **기관 간 수준 차이**를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 및 기관들의 **자구적인 개선 노력 유도**

* [기존] 3등급(우수, 보통, 미흡) → [개선안] **5등급(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질적평가 강화)** 실적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기관의 노력·성과** 중심의 **질적 평가 비중**을 높여 **평가 변별력** 및 **난이도 제고**

※ ① **(공공데이터)** 신규AI·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배점↑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등
② **(데이터기반행정)** 강화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배점↑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등

※ **중복·유사** 지표는 **통합,** 과도한 **증빙 및 수작업** 검증은 **간소화**하여 **평가 복잡도↓**

○ **(평가 일정 개선)** 평가지표 신설·개선에 따른 피평가기관의 원활한 대응 및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적 인정기간* 확대 적용

* [기존안] '24.9.1.~'25.8.31.(12개월) → [개선안] **'24.9.1.~'25.10.31.(14개월), 지표별 탄력** 적용 등

6. 평가지표의 구성

○ 개방·활용, 품질, 분석·활용, 공유, 관리체계 5개 영역 및 18개 지표

분야	영역 (200) *가점 제외	평가지표		기관 유형						
		지표명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	1. 개방·활용 (48)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10) (공)	정량	10	10	16	10	10	16	10
		1-②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10) (공)	정성	10	10	8	10	10	8	10
		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8) (공) ※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감점/건당 -1점),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감점/건당 -1점) 포함	정량	8	8	8	8	8	8	8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20) (공)	정량 정성	20	20	18	20	20	18	20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5) (공)	정량	5 (건당 1점)						
	2. 품질 (45)	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17) (공)	정량	17	17	14	17	17	14	17
		2-② 데이터 값 관리(18) (공)	정량	18	18	16	18	18	16	18
		2-③ 진단결과 조치(10) (공)	정량	10	10	10	10	10	10	10
데이터기반행정	3. 분석·활용 (50)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25) (행)	정량	10	10	15	10	15	15	15
			정성	15	15	10	15	10	10	10
		3-②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10) (행)	정량	10	10	12	12	12	12	12
		3-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15) (행)	정성	15	15	15	15	15	15	15
	4. 공유 (45)	4-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 이행률(14) (행)	정량	14	14	14	17	14	14	14
		4-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10) (행)	정성	10	10	10	10	10	10	10
		4-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6) (행)	정량	6	6	6	6	6	6	6
		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8) (행)	정량	8	8	10	10	10	10	10
		4-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7) (행) ※ '25년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만 평가대상 지표	정량	7	7	0	0	0	0	0
		4-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5) (행)	정량	5 (건당 1점)						
공통	5. 관리체계 (공)7/(행)5	5-① 추진기반 조성(3) (공) (행)	정량	3	3	4	3	3	4	3
				3	3	6	3	6	6	6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4) (공)	정량	4	4	6	4	4	6	4
		5-② 기관장 추진 의지(2) (행)	정량	2	2	2	2	2	2	2

※ (공)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 (행)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 Ⓑ**기관**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행) '4-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지표** : 중앙, 광역, *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 유형 배점 조정

7. 평가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 공표**

- **‘공공데이터 제공’**의 기관별 평가등급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및 국무회의 보고 후, ‘데이터기반행정’**의 기관별 평가등급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 후 대국민 공개**
-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 및 증빙** 내용은 **보도자료** 배포, **우수사례집** 발간 등 **대외자료에 인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적·성과를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및 제출**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표창**(대통령·국무총리·장관) **수여** 예정

※ 표창 규모는 유관부서와 협의 예정('26.上)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및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기관은 점수에 관계없이 **수여기관에서 제외**

○ 행정·공공기관 대상 **각종 평가지표**에 **평가결과 반영 협의중**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일부 지표***를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

 * ‘1-②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3-①-2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3-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 ’25년 평가결과의 최종 반영 점수는 5월 중 확정될 예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의 **전체점수(각 100점)**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비계량 1.5점)

 * 경영관리 〉 2-⑷-② 민간수요 맞춤형 개방체계 구축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방공기업)**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0.25점)’·‘데이터기반행정 평가(0.25점)’의 **전체점수(각 100점)**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

 * 경영성과 〉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 〉 ①-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Ⅱ 평가지표 세부내용

1. 개방·활용 영역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저변확대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개방 관리 노력 수준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10**	**10**	**16**	**10**	**10**	**16**	**10**	-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①-1 '25년 개방계획 이행률	5	5	8	5	5	8	5	정량
	①-2 '26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률 및 '26~'28년 개방계획 검토율	5	5	8	5	5	8	5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신규기관**	①-3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5	5	8	5	5	8	5	
	①-4 '26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률	5	5	8	5	5	8	5	
②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10**	**10**	**8**	**10**	**10**	**8**	**10**	정성
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8**	**8**	**8**	**8**	**8**	**8**	**8**	-
③-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2	2	2	2	2	2	2	정량
③-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4	4	4	4	4	4	4	
③-3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2	2	2	2	2	2	2	
③-4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감점)**		-							
③-5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감점)**		-							
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20**	**20**	**18**	**20**	**20**	**18**	**20**	-
④-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5	5	5	5	5	5	5	정량
④-2 공공데이터 민간·공공 활용 성과		5	5	5	5	5	5	5	정성
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10	10	8	10	10	8	10	
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가점)		-							정량

※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지표

지표 정의	미개방 테이블의 개방을 위한 '26~'28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여부 및 개방계획 이행 정도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은** 1-①-**1, 2**, **미제출/신규 평가대상 기관은** 1-①-**3, 4** 적용		
배점	**A기관 : 10점 / B기관 : 16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황정원 연구관**, NIA **김령은 책임(053-230-1514)**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기관 적용]

1-①-1. '25년 개방계획 이행률 ([A기관] 5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24년 기관에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5~'27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5년 계획 대비 개방이행률** 평가

※ 기관별 공공데이터 개방이행률은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10월 31일까지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10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5~'27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25년 계획 대비 개방이행률**	100% 이상	**5점**	**8점**
	80% 이상 100% 미만	**4점**	**6.5점**
	60% 이상 80% 미만	**3점**	**5점**
	40% 이상 60% 미만	**2점**	**3.5점**
	0% 초과 40% 미만	**1점**	**2점**
	0% (개방 이행 없음)	**0점**	**0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25년 개방계획은** '23년 수립한 중장기 계획이 아니라, **'24년 수립한 개방계획임**

■ 기관은 **당해 연도 현행화된 메타데이터 전체**에 대해 **다음 3년 동안의 개방계획**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매년 제출해야 함**

■ '25년 개방계획이 0건인 경우 '25년 개방계획을 재수립하고, 개방을 이행하여야 점수 획득 가능

■ **[N/A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1-①-2. '26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률 및 '26~'28년 개방계획 검토율 ([A기관] 5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24년 기관에서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25~'27년 중장기 개방계획**의

① **'26년 계획 대비 조기 개방이행 정도**와

② **현행화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26~'28년 개방계획** 검토 정도**에 대해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5.4월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5월 중으로 업로드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예정

** '26~'28년 개방계획 중 '26년과 '27년 개방계획은 전체 대비 각 30% 이상 설정 준수(감점 요인)

※ 기관별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 이행률은 '26~'27년 개방계획으로 등록된 테이블 중 '26년 목표량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10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6년 계획 대비 30% 이상 조기 개방 이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 검토 80% 이상 100% 이하	**5점**	**8점**
	60% 이상 80% 미만 검토	**4.5점**	**7점**
	50% 이상 60% 미만 검토	**4점**	**6점**
	0% 초과 50% 미만 검토	**3.5점**	**5점**
'26년 계획 대비 0% 초과 3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80% 이상 100% 이하 검토	**3점**	**4점**
	60% 이상 80% 미만 검토	**2.5점**	**3점**
	50% 이상 60% 미만 검토	**2점**	**2점**
	0% 초과 50% 미만 검토	**1점**	**1점**
'26년 계획 대비 조기 개방 미이행(0%)		**0점**	**0점**
'26~'28년 개방계획 중 '26년과 '27년 개방계획(테이블 기준) 비율이 전체 대비 각 30% 미만 시 감점		**-0.5점**	**-0.5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조기 개방 이행'**은 **'24년에 수립한 중장기 개방계획('25~'27)의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계획 검토'로 새로 수립되는 '26~'28년 개방계획은 내년도 개방이행 평가에 반영

■ 모든 기관은 '26~'28년 개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마지막 연도에 개방계획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 감점 도입

■ **[N/A 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중장기 개방계획 미제출 또는 신규 평가대상 기관 적용]

1-①-3.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A기관] 5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①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 제출 여부 및**

②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테이블***에 대한 **개방계획 검토 정도****에 대해 평가

* 중장기 개방계획에 따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25.4월 기준)된 전체 테이블을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5월 중으로 업로드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 개최 예정

** '26~'28년 개방계획 중 '26년과 '27년 개방계획은 전체 대비 각 30% 이상 설정 준수(감점 요인)

※ 기관별 '26~'28년 개방계획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서 개방계획 및 목록구성이 **10월 31일까지** 등록·승인 완료된 건을 실적으로 인정*

* 단, 10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6~'28년 중장기 개방계획 수립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 검토 80% 이상 100% 이하	**5점**	**8점**
	60% 이상 80% 미만 검토	**4점**	**6점**
	50% 이상 60% 미만 검토	**3점**	**4점**
	0% 초과 50% 미만 검토	**2점**	**2점**
중장기 개방계획 미수립		**0점**	**0점**
'26~'28년 개방계획 중 '26년과 '27년 개방계획(테이블 기준) 비율이 전체 대비 각 30% 미만 시 감점		**-1점**	**-1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만점 사례]**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현행화된 테이블 기준으로 기관의 개방가능한 테이블에 대한 '26~28년 개방계획(테이블 선정, 목록 구성)의 제출 및 등록·승인이 10월 20일까지 완료되었고, 이와 함께 목록등록관리시스템 개방대상 테이블의 개방계획을 100% 검토한 경우

■ **[0점 사례]** 10월 31일까지 '26~'28년 공공데이터 개방계획(테이블 선정, 목록구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 **[N/A 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1-①-4. '26년 개방계획 조기 이행률 ([A기관] 5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26~'28년 개방계획 중 **'26년 계획 대비 조기 개방 이행 정도**

※ 기관별 공공데이터 조기 개방 이행률은 '26~'28년 개방계획으로 등록된 테이블 중 '26년 목표량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완료하고, 목록등록관리시스템의 '메타기반 개방계획 수립/이행' 메뉴에 **10월 31일까지 이행실적 등록·승인**이 **완료**된 URL로 이행 실적 확인*

* 단, 10월 20일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이행 결과등록 신청은 완료하였으나, 이후 행정안전부의 개방 검토결과 품질 문제 등으로 반려(포털 개방검토 미통과)된 경우, 1회에 한해 수정(검토결과 통보 후 7일(휴일포함) 이내)하여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개방 미이행으로 간주

■ **평가배점**

구 분		배 점	
		A기관	B기관
'26년 개방계획 대비	30% 이상 조기 개방 이행	**5점**	**8점**
	0% 초과 30% 미만 조기 개방 이행	**2.5점**	**4점**
	조기 개방 미이행(0%)	**0점**	**0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 **[N/A 처리]** 행안부 및 사업단 협의 결과 제외대상 기관(개방가능한 테이블이 없는 경우 등)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 「①-②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

지표 정의	국민·기업의 활용 수요가 높고, AI시대 대응 및 사회문제 해결에 의미가 큰 기관의 핵심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을 평가		
배점	**A기관 : 10점 / B기관 : 8점**	**방식**	**정성** (평가시스템에 실적자료 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황정원 연구관**, NIA **김령은 책임(053-230-1514)**		

[평가방법]

[평가기준]

■ 설문조사·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한 **민간의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가 높고, AI 학습 등에 용이***하거나,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데이터 개방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 AI 학습에 활용되기 좋은 데이터로, 시계열성, 완결성, 신뢰성, 범용성 등 충족 필요

** 저출산·고령화, 재난·안전, 의료문제, 환경오염, 디지털 격차 등의 지역·사회 현안

① **'25년 10월 31일까지** 기관에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를 **개방한 실적 일체**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시 ('24년 9월 이전 포함 **개방 실적 목록** 제출)

② 기관이 보유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에 대한 개방 계획**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제시 ('25년 11월 이후 **개방 예정인 목록** 제출)

③ **실적 기간('24.9.1.~'25.10.31.) 내** 기관에서 개방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대표사례 1건**에 대한 **고수요·고가치성**, **AI친화성**(필요시), **활용성** 등을 제시(**대표사례 상세 설명서** 제출)

※ AI 친화적 데이터 및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고득점 부여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 개별 포털 업로드 후 공공데이터포털에 링크 등록)

< AI 친화적 데이터 정의 및 특징 >

■ **정의** : ① **AI 서비스 개발 수요**가 높고 ② **AI 학습에 보편적으로 활용하기 적합**한 형태의 데이터

■ **특징** : AI 학습에 보편적으로 활용되기 위한 아래의 양적·질적 요건 충족 필요

· **(시계열)** AI 모델이 패턴 인식·학습하기에 **충분한 기간**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 **(완결성)** 지역·성별·연령 등 일부 집단의 내용이 아닌 **전국 단위 등 골고루 확보**된 데이터

· **(신뢰성)**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 **(범용성) 특정 기업(서비스)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 형태**로 정제·전처리·가공된 데이터

[제출방법] 10월 31일까지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다음 자료 제출(**[첨부2]** 작성양식 참고)

■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참고사항]

■ **대표 사례 실적 기준일 : '24.9.1.~'25.10.31.**

※ 기개방 AI친화·고가치 데이터 목록('24년 9월 이전 포함) 작성 필요

※ 기관 보유 AI친화·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계획 목록('25년 11월 이후) 작성 필요

[주요 불인정 사례]

■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및 임의 수정이 안되는 자료(캡쳐 등) 증빙이 아닌 경우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참고 분야별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예시

분 야	데이터명
국토관리	도시재생구역, 위성/항공/드론 데이터, 건축도면, 입지분석, 주택공급 등
교통물류	교통사고 상세정보, 물류시설, 수출입통관, 교통약자 시설정보, 자율주행 데이터, 철도교통망, 해상운송망 등
환경기상	탄소배출 데이터, 폐기물 처리정보 등
산업고용	사업자등록정보, 고용 및 기업 정보, 소비 데이터, 발전 시설 정보 등
보건의료	의료영상, 질환별 통계, 반려동물 의료데이터, 의약품 등
농축수산	농업방역, 수산물유통, 축산농가현황 등
식품건강	건강기능식품 정보, 음식 사진, 레시피DB, 식품원재료, 의료기기 등
공공행정	인구통계, 선거데이터, 공문서(회의록), 주소정보 등
과학기술	3D지도데이터, 드론비행, 로봇, R&D 등
재난안전	인구 밀집 지역 CCTV, 실시간 지진 예측 정보, 비상사태 및 재난 구호 관련 정보 등
문화관광	국악, 대중음악 등 음성·음악 데이터, 문화재 3D데이터 등
사회복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교 육	학교 및 학원 분포, 교육사업, 교육수준 및 역량 통계 등
법 률	저작권 분쟁 사례 등
재정금융	정부 세부 지출, 주식정보, 신용정보 등
통일외교안보	방위사업, 북한정보, 병역현황, 보훈데이터 등

○ 「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된 기관의 데이터 관련하여 대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노력 및 공공데이터 관련 정부 권고 이행 여부를 평가		
배점	**8점**	**방식**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및 행안부 보유자료 집계)
담당자	**(기준①~③)**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재욱 주무관(044-205-2473)**, NIA **박성환 선임(053-230-1567)** **(기준④)** 행안부 공공서비스통합과 **이우창 사무관(044-205-2726)**, NIA **김보람 책임(053-230-1517)** **(기준⑤)**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박동준 사무관(044-205-2463)**, NIA **이보옥 책임(02-6191-2063)**		

[세부기준]

번호	평가항목	배점	방식	제출방법
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	2점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및 행안부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	4점		
3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	2점		
4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	(감점)		
5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감점)		

[1-③-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적기 처리율(배점2점)

계산식

$$\left\{\frac{\text{기한내 신청처리 건수}}{\text{특정기간내 신청 접수건수}}+\left(\frac{\text{기한초과후 신청처리건수}}{\text{특정기간내 신청 접수 건수}}\times 0.3\right)\right\}\times \text{배점}$$

평가기준

- **처리기한** : 기관의 제공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연장 시 최대 20일 이내)
- **실적기간** : '24.9.1.~'25.9.30.
- **신청 처리 기준** : 처리완료에 해당하는 "제공", "제공불가", "보완필요"인 경우

점수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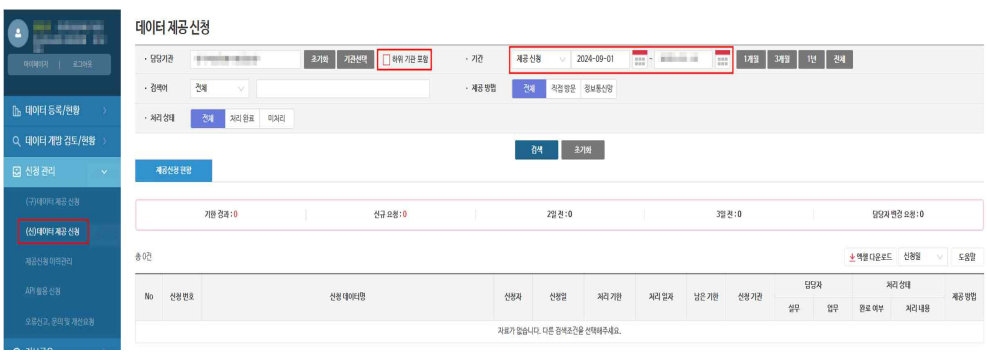
구 분	점 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2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1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0.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제공신청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0점

※ **N/A 처리** : '24.9.1.~'25.9.30. 기간 중 제공신청이 0건인 경우 **(만점처리)**

실적 확인 방법

- **신청관리 > (신)데이터 제공 신청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기간 : 제공신청; **'24.9.1.~'25.9.30.**, 제공방법 : **전체**, 처리상태 : **전체**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 기관 포함' 체크**, 평가실적은 '제공신청 취소'는 제외하여 집계됨

- 위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처리일자"가 "처리기한" 이내인 경우 적기 처리로 판단

[1-③-2] 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배점4점)

계산식

$$\frac{\text{차기등록예정일이 '25년 9월 30일 이후인 목록수(파일, 표준데이터셋)}}{\text{포털에 개방중이거나 개방검토요청한 전체 목록수(파일, 표준데이터셋)}} \times 100(\%)$$

평가기준

■ **평가대상 :** ①'25.9.30.에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이거나,
②'25.9.30. 이전에 등록·변경 개방검토를 요청한 데이터

※ 링크데이터, 오픈API, 1회성 수시데이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실적인정 :** '25.10.31.에 개방이 완료되고, 차기등록예정일이 '25.9.30. 이후인 경우

※ 데이터 내용의 최신화 없이 의도적으로 파일명만 변경·등록하거나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주기성 데이터를 1회성 수시 데이터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0점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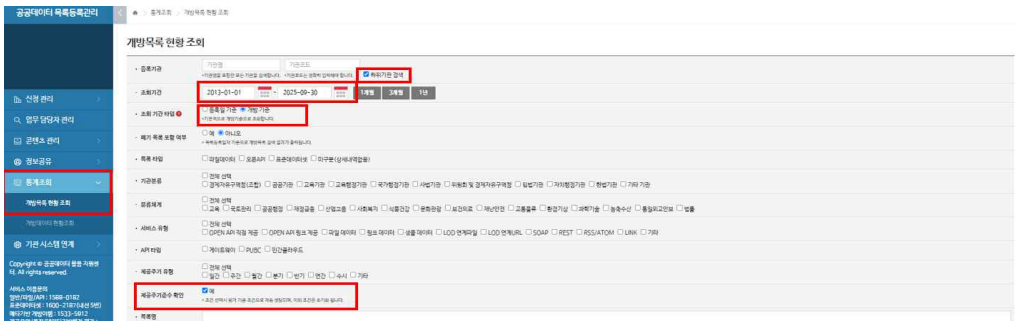
점수산정

구 분	점 수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90% 이상	4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80% 이상	3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70% 이상	2점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60% 이상	1점
개방하는 모든 파일데이터의 제공주기를 정의하고 있지 않거나 목록의 제공 주기 준수율이 60% 미만	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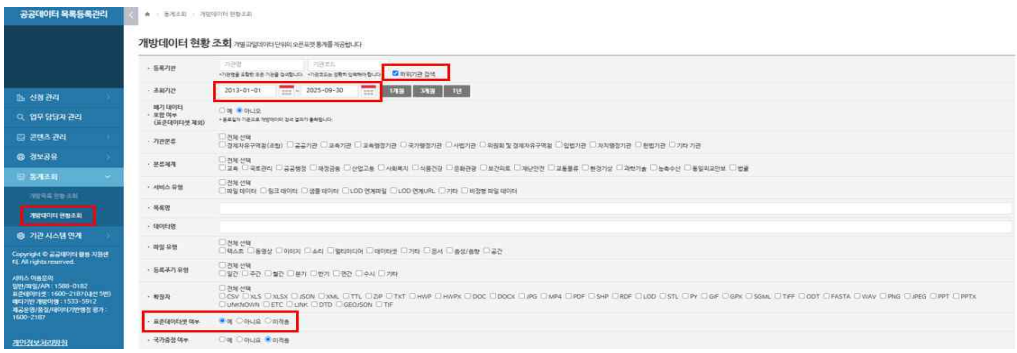
※ **N/A 처리 :** '13.1.1.~'25.9.30. 내에 개방데이터(파일, 표준데이터셋)가 0개인 경우
→ **A·B기관별 평균점수로 처리**

실적 확인 방법

1. 파일데이터(목록 단위) : 통계조회 > 개방목록 현황 조회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조회기간 : '13.1.1.~'25.9.30, 제공주기준수 확인 : 체크**(체크시 링크데이터, 1회성데이터 등 제외)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2. 표준데이터셋(데이터 단위) : 통계조회 > 개방데이터 현황조회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조회기간 : '13.1.1.~'25.9.30, 표준데이터셋 여부 : "예" 선택**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 위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차기등록예정일'이 '25.9.30. 이후인 데이터는 제공주기가 준수된 것으로 판단

[1-③-3] 공공데이터 오류신고 적기 처리율(배점2점)

계산식

$$\frac{\text{신고처리기한(영업일기준10일이내)내처리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text{기준기간내신고접수된오류신고및문의건수}} \times 100(\%)$$

평가기준

■ **평가대상 :** 기준기간('24.9.1.~'25.9.30.) 내 접수된 데이터 오류신고 및 문의 건
※ 오류신고, 오픈API활용문의 등 모든 유형의 문의가 해당되며, '접수취소'는 대상에서 제외

■ **실적인정 :** 오류신고·문의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처리된 경우, 기한 내 처리로 인정

점수산정

구 분	점 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90% 이상	2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80% 이상	1.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70% 이상	1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60% 이상	0.5점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오류신고·문의 적기처리율이 60% 미만	0점

※ **N/A 처리 :** 기준기간 내 오류신고 및 문의건수가 0인 경우 **(만점처리)**

실적 확인 방법

■ **신청관리 > 오류신고, 문의 및 개선요청** > (조건 설정 후) 검색
※ **(설정조건)** 검색기간 : **신고일자 '24.9.1.~'25.9.30.**, 데이터요청·데이터유형·처리상태 : **전체**
※ 소속기관 실적 포함을 위해 **'하위기관 포함' 체크**



- 위 조건으로 검색한 결과 중 "처리일자"가 "처리기한일자" 이내인 경우 적기 처리로 판단

[1-③-4]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미수행(-1점/건)

평가방법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중 미수행 서비스당 1점씩 감점
평가대상	■ '25년 신규 정비 권고 및 '17~'24년 재권고 대상(앱서비스)
참고사항	■ 민간 중복유사서비스 정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를 하지 않겠다고 계획을 제출한 경우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25년 신규 권고 대상기관 중 정비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정비 미수행 기관에서 제외 * 서비스 폐지, 중복기능 제거, 고도화 중지, 기술이전, 상생협력

[1-③-5]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1점/건)

평가방법	■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 불수용* 1건당 1점씩 감점 * 실적 인정기간('24.9.1. ~ '25.9.30.) 내 불수용 건

○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및 성과」 지표

지표 정의	기관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관의 다양한 노력 및 성과 수준을 평가		
배점	**A기관 : 20점 / B기관 : 18점**	**방식**	**정량·정성** (평가시스템에 실적자료 제출)
담당자	**(기준①)**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황정원 연구관**, NIA **김령은 책임(053-230-1514)** **(기준②~③)**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044-205-2476)**, NIA **김민규 책임(053-230-1547)**		

[세부기준]

번 호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방식	제출방안
		A기관	B기관		
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	5점	5점	정량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자동 집계
2	공공데이터 민간·공공활용 성과	5점	5점	정성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제출 (ⓐ성과보고서, ⓑ증빙자료) ※ 기준별 성과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각각 하나의 PDF파일 형태로 제출
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10점	8점	정성	

[1-④-1] 활용성 진단 서비스 기준값 달성도(배점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25년 10월 31일까지** 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 전체 목록 중 활용성 진단 서비스***의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15점 이상)을 충족한 목록의 비율** 측정

* 5개 진단지표(이해가능성, 연계가능성, 가공편의성, 중요성, 준수성)로 개방 목록의 활용 용이 수준 진단

** 데이터 검색 편의와 사용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목록 등록시 **키워드와 설명**을 상세하게 작성한 정도

※ 공공데이터포털 개방 전체 목록(표준데이터셋 제외)에 활용성 진단 서비스 '이해가능성' 지표 적용 : '25.5.15.~

목록 개방시점	'이해가능성' 점수 측정 기준
~'25.5.14.	• 월 2회[1일·15일] 자동 측정된 '이해가능성' 점수를 확인하여 **15점 미만인 목록의 경우 키워드와 데이터 설명을 수정**해야 함
'25.5.15.~	• **목록 신규 등록시 '이해가능성' 점수가 15점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가능

※ '이해가능성' 점수 확인 및 수정 방법은 참고사항 확인

■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도 계산식** **(※ 최종 집계시점 : '25.11.1.)**

$$\frac{\text{이해가능성 지표 15점(20점 만점) 이상인 목록 수}}{\text{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중인 전체 목록 수}} \times 100(\%)$$

■ **점수산정**

구 분		배 점
'이해가능성' 지표 기준값 달성도	90% 이상	**5점**
	80% 이상 90% 미만	**4점**
	70% 이상 80% 미만	**3점**
	60% 이상 70% 미만	**2점**
	60% 미만	**0점**

[제출방법]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내 활용성 진단서비스 자료 집계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참고사항]

['이해가능성' 지표(20점 만점) 충족방법 안내]

① **키워드** : 기본 3개(2.3점), 최대 8개까지 등록 가능, **1개 추가시 0.02점 가점**

※ 목록을 설명하거나 연상시키는 키워드를 중복 없이 등록, '핵심 키워드' 포함 가능

② **데이터 설명** : 기본 50글자(12.36점^{중복구문無}), **50글자 추가시 0.1점 가점**

(작성요령) 데이터의 수집 목적·과정 및 전반적인 내용, 데이터 세부 항목, 활용 기대효과 등 작성
(예 시) 소방청_구급정보서비스(API)

- 인구 고령화, 교통수단 다양화 등의 사회 변화로 119구급 출동 건수 증가, 각 분야에서 구급활동정보에 대한 활용 요청 증가에 따라 소방청은 구급활동시 환자이송, 환자상태, 응급처치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방 데이터는 (구급정보)구급환자이송정보, 구급환자상태정보, 구급환자응급처치정보, 구급차량출동정보, 구급차량정보, 구급활동정보 6종 약8,350만건 (구급통계)교통사고구급활동현황, 구급출동유형별현황, 구급상황관리센터운영현황, 사고장소별이송환자현황, 이송환자병력현황, 연령별이송환자현황, 구급활동현황 7종 약 70만 건입니다.
- 학계·연구기관은 구급활동의 계절별 추이, 환자증상유형, 사고빈발지역 분석과 구급업무 효율화 및 예방정책 수립 등의 구급상황 연구에 활용하고, 의료·보건기관은 보유중인 데이터와 구급정보 개방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구급환자 발생 및 증상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법 등의 연구에 활용하고, 참여기관은 구급정보 공유를 통하여 사고장소, 환자유형, 출동 유형 등 세부자료 활용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데이터는 익명성 확보를 위한 처리로 인하여, 소방청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데이터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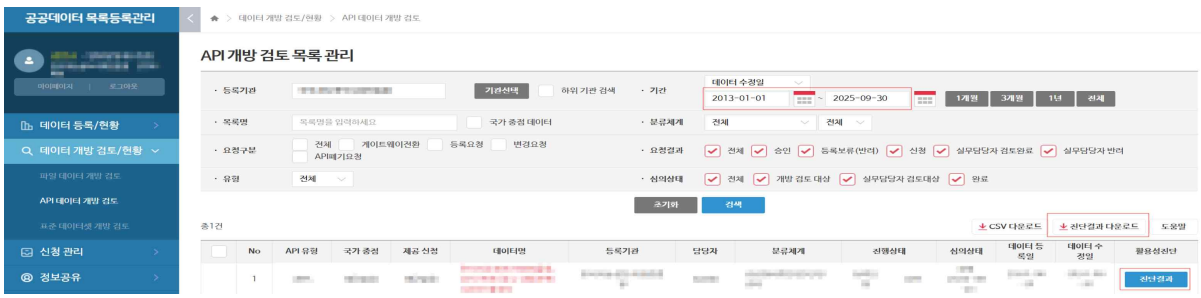
['이행가능성' 지표 15점 사례] 키워드 5개(2.34점), 데이터 설명 200글자(12.66점)

[실적 확인 방법] 데이터개방검토/현황 > 파일데이터/API데이터 개방 검토 > 목록별 **"진단결과"**

※ **(설정조건) 기간 :** '13.1.1.~'25.9.30., **요청결과/심의상태** : 전체

※ "진단결과 다운로드" 클릭시 전체 목록의 진단점수 확인, "진단결과" 클릭시 개별 진단 결과보고서 확인

<목록등록관리시스템 메뉴 위치>



<진단결과 화면 예시>

☞ **'이해가능성' 글자 위에 마우스를 올려 상세 점수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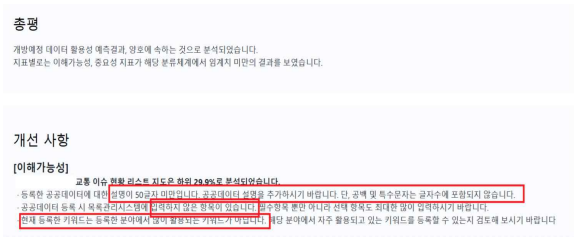


~ '25.5.14. 개방 목록	'25.5.15.~ 개방 목록(진단 시뮬레이션 실시 후)

[키워드/설명 수정 방법] 데이터 등록/현황 > 파일(API) 데이터 등록 > 목록별 "변경요청"

<(기개방) 진단결과 확인 후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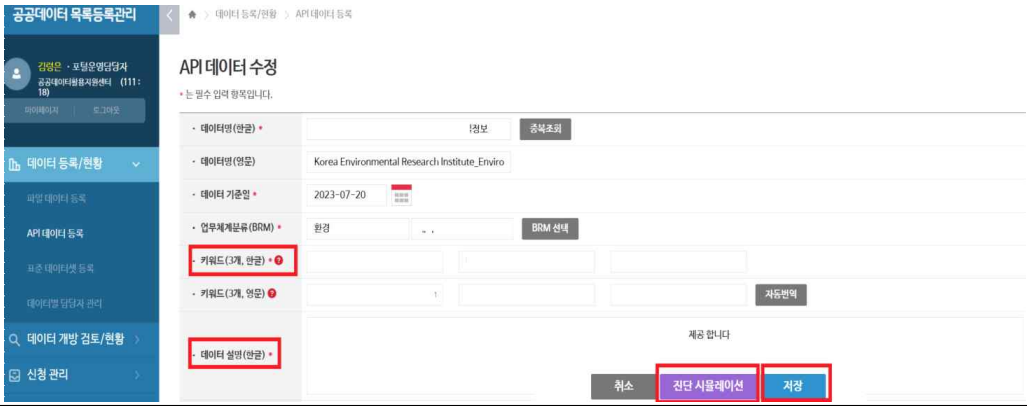
① 진단결과 하단의 개선사항 확인



② '데이터 등록/현황'에서 기관 데이터의 상세정보 페이지 하단의 **'변경요청'** 클릭



③ ①번의 개선 사항에 따라 '키워드/설명' 수정 → **'진단 시뮬레이션'** → '이해가능성' 점수 15점 이상 → **'저장'** 클릭(※ **활용지원센터 승인 후 최종 수정**)



<(최초등록) 진단 시뮬레이션에 따른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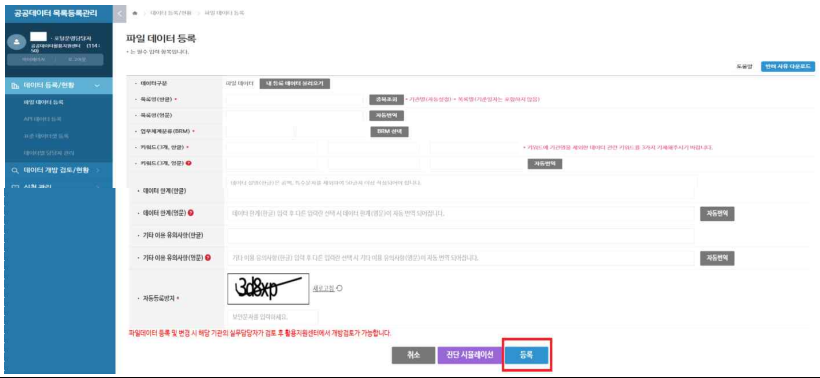
① 데이터 등록/현황 > 파일(API)데이터 등록 > 데이터 등록 화면 하단 **'진단 시뮬레이션'** 클릭



② '이해가능성' 점수 15점 미만 → ①번 회귀 → 설명/키워드 수정 → '진단 시뮬레이션' 재실시



③ '이해가능성' 점수 15점 이상 → **'등록'** 클릭(※ **활용지원센터 승인 후 최종 등록**)



[1]-④-2] 공공데이터 민간·공공활용 성과(배점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제공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기준으로 5점 만점 정성평가 실시

- 제출 사례 수 : 분야(앱·웹, 논문 등) 구분없이 **대표사례 1개 제출(A기관/B기관 동일)**

■ **인정분야 및 분야별 작성항목**

- 앱·웹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 기여 등

구 분	작성항목	
	개 별	공 통
앱·웹서비스	서비스명, 서비스URL, **운영주체**, **실적일자**, **파급효과**	개요, **우수성·필요성**, **기관 데이터의 활용부분**, 데이터명, 데이터URL, **기관지원노력**
논문(논문제출 필수)	논문명, **서지정보***, **실적일자****	
특허(특허증 제출 필수)	특허명, 특허번호, 발명자정보, 출원·등록일자	
기 타	*※ 제품개발 및 지식재산에 준하는 기관의 실적을 작성하되, 데이터 분석·공유사례 등과 같은 타지표 제출 실적은 불인정되며, 첨부양식은 일부 조정 가능*	

※ **밑줄(작성항목)** : 증빙자료 필수 제출 항목

※ 논문의 경우 PDF 형태의 논문을, 특허의 경우 특허번호 등을 포함한 PDF 형태의 특허증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

* 서지정보 : 학술지 및 출판물에 등재된 논문은 저널명, 권/호, 페이지번호 등을, 단순 학위논문은 학위유형(석사/박사 등), 제출연도, 소속기관, 지도교수 등 각 성격에 맞는 필수 정보를 작성하여야 함

** 실적일자 : 논문의 승인일자 혹은 학술지 등재일자 등 어떤 일자든 실적 인정기간 내에 해당되면 인정

[실적인정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14개월)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① 성과보고서 : [첨부3]에 맞춰 [1]-④-2]와 [1]-④-3]의 실적을 하나의 보고서로, 10페이지 이내의 PDF 파일로 제출

② 증빙자료 : 각 실적별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① 실적인정기간 외의 실적*	④ 기관 개방데이터 미활용 사례
② 평가시점에 미운영중인 앱·웹서비스	⑤ 증빙자료 중 공식문서 및 수정 불가자료가 아닌 경우**
③ 본인기관 사례 제출	⑥ 증빙자료 중 필수 제출 항목을 누락한 경우

* (앱·웹서비스)실적일자, (논문)승인·출판일자, (특허)출원·등록일자 해당

** (공식문서)공문, 보고문서, 결재문서 등, (수정 불가자료)화면캡쳐, 사진 등

[점수 차감 사례]

■ 보고서상 사례의 파급효과 등이 증빙자료 대비 과장된 경우

[추가 안내사항]

■ 분야(앱·웹, 논문 등) 구분없이 **대표사례 1개만 제출**(1개 이상 제출 시 첫 번째 사례만 평가)

■ 기타 사례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보고서 양식 조정 불가

■ 첨부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일부 누락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미인정

['24년 사례](※ 아래 내용은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점 사례는 아님)

홍수·침수 위험지역 실시간 알림 서비스	
서비스개요	- 현대차·기아, 카카오, 티맵 등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도로·지하차도 홍수·침수 위험지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우수성	- 여름철 실시간 홍수·침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여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파급효과	- 서비스로 인해 도로 침수와 지하차도 통행 위험을 미리 알려 운전자들이 안전한 길로 우회하도록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기관의 지원노력	①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전담반에 참여 ② 민간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유관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기업에서 활용하기 좋은 형태로 정비·가공을 수행함 ③ 기업이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API 형태로 개발하고, 포털을 통해 개방함 ④ 알림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및 SNS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 지원

지역화폐 가맹점 실시간 지도	
서비스개요	- 지역화폐 가맹점 현황을 카카오맵에 연동하여 사용자가 지역화폐 가맹점의 운영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서비스 우수성	- 지속적인 데이터 및 가맹점정보 관리를 통해 지역화폐 사용자들의 원활한 지역화폐 사용을 지원
파급효과	- 대중에 익숙한 맵 서비스를 활용하여 누구든 관심있는 가맹점의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지역화폐의 활성화에 기여
기관의 지원노력	① 카카오와의 협력을 통해 관련 API를 개발함 ② SSL오류, 데이터 정제, 킷값 매칭 등 지속적인 오류 수정을 수행함 ③ 다양한 시군의 가맹점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수행함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공영주차장 서비스	
서비스개요	- 다둥이 고객을 위한 무정차·비대면 주차요금 결제서비스 및 공영주차장 만차 예측서비스 제공
서비스 우수성	- 다둥이 고객의 결제편의 제고 및 만차 예측시스템을 통한 이용시민의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도모
파급효과	- 다둥이 고객의 감면절차 개선으로 다자녀 감면이 '22년 대비 130% 증가하였고,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증가로 '22년 대비 가입자수 75% 증가
기관의 지원노력	①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의 다둥이 신청 정보를 공유받기 위한 지속적인 업무협의 실시 ② 주차정보와 다양한 데이터(축제·행사 인근 주차장 이용량 등)를 활용하여 만차 예측 알고리즘 개발

카카오맵을 통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서비스개요	- 역사 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승강장 연단 간격 데이터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발빠짐 사고 예방
서비스 우수성	-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시 소관 역사의 승강장 연간 간격 및 엘리베이터, 휠체어 전용석 등을 고려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 편의를 제고함
파급효과	- 도시철도 이용 고객의 발빠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감소로 인한 피해보상 및 운행 지연 비용 절감
기관의 지원노력	① '부산지역문제해결플랫폼' 협업기관으로 참여하여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배리어프리DB 구축 프로젝트 지원 ② 카카오와 MOU 체결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1]-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A기관] 10점 / [B기관] 8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국민·기업이 기관 개방데이터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기관의 노력* 수준**과 **추진 성과**** 관련 대표사례를 제시하고, 각 사례별 정성평가 실시

* 예) 간담회 개최, 설문조사 실시, 기업 지원 등 기관이 직접 수행한 내용

** 예) 투자유치, 방문자수 증가 등 기관이 수행한 노력을 통해 창출된 효과

- **제출 사례 수** : A기관 **5건**, B기관 **4건**

■ **작성항목** : 실적명, 수행시기, 추진필요성(추진배경), 추진내용, 핵심성과

■ **인정실적**

분 야	인정 실적
기업지원	기업·시민사회 등과의 파트너십 운영, 기업지원*, 기관 데이터 활용 절차 간소화,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해커톤·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기관 데이터를 활용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자금, 인프라, 협업프로젝트, 교육, 컨설팅 지원 등
활용지원	디지털 약자의 공공데이터 접근성 개선, 대국민 대상 공공데이터 인식 제고 및 활용 교육 실시, 공공데이터 활용 관련 설문조사
홍 보	기관 공공데이터의 우수성 및 활용사례 등의 언론 및 미디어 홍보
기 타	기관 자체 데이터포털 구축·개선, 전국 통합성데이터 개방사업 참여 등

[실적인정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14개월)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① 성과보고서 : **[첨부3]**에 맞춰 [1]-④-2]와 [1]-④-3]의 실적을 10페이지 이내의 PDF 파일로 제출

② 증빙자료 : 각 실적별 증빙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하나의 PDF 형태로 제출

[참고사항]

[실적 불인정 사례]

①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와 무관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② 실적인정기간 외의 실적	⑤ [1]-④-2]의 기관 지원노력 또는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 지표 제출 실적과 중복인 경우
③ 공식적인 문서(공문, 결재문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과 무관한 기업 대상 통상적 지원, 디지털 관련 행사 개최 등

[점수 차감 사례]

■ 단순 추진 실적 외 구체적인 추진 결과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보고서 작성 내용 중 일부사항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민감정보 포함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개방**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배점	**가점 1점 / 건 (최대 5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배재완 사무관**, NIA **최인선 수석(053-230-1563)**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이 민간에 공공데이터포털 및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개방**한 실적

< 관련 용어 설명 >

- ▸ 제공: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데이터 전달
 (대상) 공공데이터포털, 정보공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된 제공신청에 대한 처리건
- ▸ 개방: 국민 누구나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개
- ▸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합성데이터: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점수산정] 가명정보 제공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 **1건당 1점 가점 (최대 5점)**

■ 가명 처리된 **동일 데이터**를 여러 대상에게 제공하였더라도 **1건으로 처리**

■ 합성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연계데이터* 포함)**한 건에 한해서 인정

* 기관 개별포털의 연계를 통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데이터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 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첨부4]** 작성양식 참고)

■ 가명정보·합성데이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문, 포털 화면, 이메일 등 ①공식적인 신청 증빙자료, ②제공·개방 증빙자료
-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 ④적정성 검토 또는 안정성·유용성 검증 최종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 증빙자료는 ①②③④ 모두 제출해야 실적 인증(합성데이터는 ① 생략 가능)
※ 증빙자료에는 신청 일자, 제공·개방 일자, 검토·검증 완료 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민감정보 비식별 조치 후 제출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 기준일('24.9.1. ~ '25.9.30) 내의 제공·개방 실적이 아닌 경우

■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가 없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 예)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④결과 보고서가 없는 경우

■ 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정성)과 중복 제출된 경우

[기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준수

2. 품질 영역

< 평가목적 >

공공기관이 생성·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 관리체계 및 오류 개선

지표구성	배 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17**	**17**	**14**	**17**	**17**	**14**	**17**	정량
①-1 평가대상 DB관리	3	3	3	3	3	3	3	
①-2 예방적 품질관리	4	4	4	4	4	4	4	
①-3 데이터 표준관리	6	6	4	6	6	4	6	
①-4 데이터 구조관리	2	2	2	2	2	2	2	
①-5 데이터 연계관리	2	2	1	2	2	1	2	
② 데이터 값 관리	**18**	**18**	**16**	**18**	**18**	**16**	**18**	
②-1 데이터 품질진단	8	8	6	8	8	6	8	
②-2 데이터 오류율	10	10	10	10	10	10	10	
③ 진단결과 조치	**10**	**10**	**10**	**10**	**10**	**10**	**10**	

※ Ⓐ**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영역	평가 지표	실무담당자 (총괄)	업무담당자 (DB 담당)
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①-1 평가대상 DB관리	●	
	①-2 예방적 품질관리	●	
	①-3 데이터 표준관리	●	●
	①-4 데이터 구조관리		●
	①-5 데이터 연계관리		●
② 데이터 값 관리	②-1 데이터 품질진단		●
	②-2 데이터 오류율		●
③ 진단결과 조치	품질진단 결과 조치		●

○ 「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품질관리 활동을 평가		
배점	**17점** (※ 기초, 기타공공 14점)	**방식**	**정량** (세부지표별 [평가 방법] 내 [제출자료] 참조)
담당자	2-①-1, 5 :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김재성 책임(053-230-1539)** 2-①-2 :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김혜윤 주무관(044-205-2490)**, NIA **류도 수석(053-230-1535)** 2-①-3, 4 :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장진욱 주무관(044-205-2492)**, NIA **이수민 주임(053-230-1540)**		

2-①-1. 평가대상 DB관리(배점3점)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을 위한 일정 준수, 신규 평가대상 DB선정 비율,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보유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	1점
2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	1점
3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계획 수립	1점

[점수산정]

■ (기준1) 보유DB 현행화 및 평가대상 DB 선정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DB 선정기준**(보유DB의 60% 이상)에 따라 평가대상 DB 선정을 6.30.까지 완료해야 함 ※ 8.31.까지 미선정 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임의 선정 예정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기관 보유 DB 검색 가능

** 선정기준 : 기관 보유DB의 60% 이상을 선정하되, 보유DB가 14개 이하인 기관은 전체DB, 15~25개인 기관은 15개 이상 DB를 선정, 그 외 기관은 아래표 참조

보유 DB	14개 이하	15~25개	26~74개	75개 이상
평가대상 DB	전체	15개 이상	16~44개 이상	45개 이상

1) 개방·활용 데이터 및 대국민서비스(재난·안전분야 등) 등 중요시스템은 우선 선정
2) DB생성 및 수정·삭제 등 변경된 DB가 있으면 보유DB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수정해야 함
3) 전체 평가대상 DB 중 표준배포시스템 DB 선정은 50% 미만으로 선정

※ 제외 대상 : 이미 폐기된 시스템

※ 고도화·재구축 등이 진행중인 정보시스템(DB)은 운영중인 정보시스템(DB)으로 진단·평가를 수행해야 함

■ **(기준2) 신규 평가대상 DB 선정**(보유DB 16개 이상 기관만 해당)

- 전년도('24년)에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DB를 올해('25년) 평가대상 DB로 선정한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진단·평가 기준	점수
신규 DB 비율이 50% 이상	1점
신규 DB 비율이 25% 이상 ~ 50% 미만	0.5점
신규 DB 비율이 25% 미만	0점

※ 전년도('24년)에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DB를 올해 모두 선정하더라도 신규 DB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점수 부여

기관보유 DB (A)	'24년 선정 DB (B)	진단 미수행 DB (C=A-B)	'25년 선정 DB (D=A*0.6)	
26개	15개	11개	16개	신규 (D*0.5) 8개
26개	19개	7개	16개	신규 (D*0.5) 7개*

* 기관 보유 DB는 26개이고, '24년 초과 선정 등 DB를 제외하고 남은 DB 수가 7개일 때 최대 선정 가능 DB(50%) 8개를 충족하지 못하지만, 잔여 7개를 모두 선정하면 만점 부여

■ **(기준3)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계획 수립**(보유DB 16개 이상 기관만 해당)

- 각 기관 전체 보유DB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를 최소 1년에서 3년 이내에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 평가대상 DB 선정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 기관명, 보유 DB명(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DB명과 일치해야 함), 연도별 평가대상 DB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유 DB가 120개 이상인 기관은 3년 이내에 중요 DB를 포함한 전체 DB를 진단·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유 DB별 진단·평가 주기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계획 수립·제출 시 만점(1점) 부여

※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계획 공문서(내부 결재문서) 제출 필요(~9.30.까지)

[제출자료] (기준3)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집계)

■ **(기준2)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자동 집계)

■ **(기준3)**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을 통해 품질관리 평가대상 DB선정 계획 수립 공문서* **제출 필요** * 기안자와 결재자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상위 결정권자이어야 함

2-①-2. 예방적 품질관리(배점4점)

정보화사업 추진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수행 여부 및 진단결과 반영 여부를 단계별로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수행	1점
2	사업발주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2점
3	사업완료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1점

[점수산정]

■ (기준1)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수행

- '24.10.1.~'25.8.31. 기간 중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DB 분야)를 확인하여 **예방적 품질관리 자체진단 여부 판단**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사전협의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선정
- 평가산식 :

$$\text{점수} = \frac{\text{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수행 사업 수}^{2)}}{\text{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대상 사업 수}^{1)}} \times \text{배점}$$

1) '24.10.1.~'25.8.31. 기간동안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한 사업 중 **DB 품질관리 대상** 사업 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사전협의 신청일'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선정)

2)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대상 사업 중 DB분야 진단항목*에 대한 자체검토·진단내역을 포함하여 **사전협의 자체검토 결과**를 작성한 사업 수
 * DB분야 진단항목 세부사항은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 참고

■ (기준2) 사업발주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24.9.1.~'25.8.31. 기간 중 통보*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발주를 위해 사업계획(제안요청서) 요구사항 확정 시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를 반영했는지 여부 평가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검토결과 통보일'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선정하되, '보완후 협의' 사업은 '반영계획 점검등록일'을 기준으로 함

※ 사전협의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의견 반영 결과(제안요청서)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 함('25.9.30.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반영으로 판단)

- 평가산식 :

· 점수 =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비율[2]의 합계 /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검토결과 통보 사업 수[1]) × 배점

1) 사전협의 신청 후 '24.9.1.~'25.8.31. 기간동안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수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서 확인되는 '검토결과 통보일' 기준)
* 사전협의 검토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사업의 경우, '25.8.31.까지 재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

2)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비율 = 검토대상 진단항목 중 최종 반영된 항목 수 / (검토대상 진단항목* - 해당없음 항목 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의 항목 수
** 사전협의 결과 중 사업내용과 맞지 않아 반영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반영 불가 사유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해당없음 항목'으로 인정

■ (기준3) 사업완료 단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반영

- '21.3.12. 이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24.9.1.~'25.7.31. 기간동안 완료된 사업 중 제안요청서 보완 등 사전협의(DB분야) 검토의견을 받은 사업(이하 '이행점검 대상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의견 반영하여 사업이 이행되었는지 여부 평가

※ 이행점검 대상 사업은 사전협의 이행결과(사업결과 산출물, 완료보고서 등)를 '25.8.31.까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하여야만 이행된 것으로 판단(8.31.까지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으로 판단)

- 평가산식 :

· 점수 =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이행비율[2]의 합계 / 예방적 품질관리 이행점검 대상 사업 수[1]) × 배점

1) '21.3.12. 이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신청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사업 중 '24.9.1.~'25.7.31. 기간동안 완료된 사업

2) 사업별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결과 이행비율 = 완료단계에서 이행된 항목 수 / (점검대상 진단항목*- 해당없음 항목 수**)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23.4월 배포) 3.2.1.3 정보화사업 유형 및 금액별 진단기준 항목 중, 사전협의 검토의견을 받은 항목 수
** 사전협의 결과 중 사업내용과 맞지 않아 반영 불가능한 항목이 있는 경우
반영 불가 사유와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증빙자료를 검토 후 '해당없음 항목'으로 인정

[제출자료]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1)** 사전협의 신청 시 제출한 자체 검토 결과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사전협의 검토의견 반영결과(제안요청서)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3)**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된 사전협의 이행결과(사업결과 산출물, 완료보고서 등)로 평가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필요시 추가 자료 요구 가능(사업완료 보고 공문만 등록하여 세부 이행결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2-①-3. 데이터 표준관리(배점6점)

평가대상 DB에 대하여 상위표준을 준용한 기관·DB표준을 정의하여 대상 DB에 적용하고, 공통표준용어 기준으로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A기관	B기관
1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정의	2점	2점
2	데이터 표준 적용률	3점	2점
3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1점	-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점수산정]

■ (기준1) 상위표준을 준용한 데이터 표준 정의

-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을 정의하고, 기관표준을 준용하여 평가 대상 DB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정의 여부를 평가
- 기관담당자는 기관표준, DB담당자는 DB표준의 표준용어・표준단어・표준도메인・표준코드 항목*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점검을 수행해야 함

* 항목 : **(표준용어)**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표준도메인명, 제정일자, **(표준단어)** 표준단어명, 단어 영문약어명, 형식단어 여부, 제정일자, **(표준도메인)** 도메인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제정일자, **(표준코드)** 코드명, 코드값, 코드값 의미, 제정일자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정의 시 기관표준은 공통표준을 준용하고, DB표준은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을 준용하여야 하며, '표준코드' 정의 시 기관표준 및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및 상위표준(공통표준·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한 DB표준, 기관표준에 대해 완전성 점검과 상위표준 준용 점검을 수행해야 함

- 평가 산식 :

$$\text{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3)} \text{ 합계}}{\text{평가 대상 DB 수}^{1)}} \times A^{2)}$$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기관표준 정의 및 공통표준 준용에 대한 점수로, 공통표준을 준용하여 기관표준을 정의한 경우 A=1, 기관표준을 정의하였으나 공통표준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 A=0.9, 기관표준을 정의하지 않은 경우 A=0.8
3) DB별 점수 산정 기준

① 표준용어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평가기준★ 수}}{\text{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times 0.6$	①, ②, ③, ④ 점수의 합 [3]
② 표준단어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평가기준★ 수}}{\text{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times 0.4$	
③ 표준도메인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평가기준★ 수}}{\text{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times 0.6$	
④ 표준코드 점수 = $\frac{\text{충족되는 평가기준★ 수}}{\text{해당되는 평가기준★ 수}} \times 0.4$	

★ 평가기준 : '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 점수 산정기준

평가 기준	내용
㉠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DB표준 등록 및 완전성 점검(중복, 형식오류 등) 성공 여부
㉡ 기관표준 준용 여부	DB표준의 기관표준 준용 여부 ※ 평가대상 DB 구축 시점이 기관표준 제정 이전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 평가
㉢ 공통표준 준용 여부	DB표준의 공통표준 준용 여부 ※ 평가대상 DB 구축 시점이 공통표준 최초 제정('20년 8월) 이전인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 평가

* 표준코드는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 '㉡기관표준 준용 여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만 평가함

※ 기관표준 및 공통표준 준용 점검을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표준 정의'가 선행되어야 함

■ (기준2) 데이터 표준 적용률

- 평가대상 DB의 컬럼에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적용 여부를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또는 메타관리시스템의 컬럼정보와 비교하여 평가

※ DB표준 적용여부 평가대상 :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의 영문약어명과 표준도메인의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

※ 데이터 표준 적용률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DB표준 완전성 점검과 DB표준 적용 점검(메타)을 수행해야 함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bf{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bf{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데이터 표준 적용률(%) = $\frac{\text{데이터 표준이 적용된 컬럼 수}^{2)}}{\text{전체 컬럼 수}^{1)}} \times 100$

1) 전체 컬럼 수 : 평가대상 DB의 전체 컬럼 수(메타관리시스템 기준)

2) 평가대상 DB의 컬럼 중 DB표준**(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이 적용된 컬럼 수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표준 적용률 90% 이상	3점	2점
표준 적용률 80% 이상 ~ 90% 미만	2점	1.5점
표준 적용률 70% 이상 ~ 80% 미만	1점	1점
표준 적용률 70% 미만	0.5점	0.5점
미수행	0점	0점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 (기준3)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 비표준 데이터 매핑 대상을 식별하고, 공통표준용어를 적용하지 않은 DB표준용어는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매핑하여 관리하는지 여부 평가
- 의미가 같은 용어에 대하여 DB표준용어에서 공통표준용어와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 **비표준 데이터**로 분류하고,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길이'**를 포함하여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를 **관리**하여야 함(시스템에서 비표준 매핑 지원)

1) 비표준 데이터 매핑대상인 DB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와 매핑되어야 함

2)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는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여 구축 및 연계·활용해야 하므로, 모든 DB는 구축 시점과 상관없이 비표준 데이터 매핑정보 관리 대상임

< DB표준용어 비표준 데이터 매핑 예시 >

DB표준용어				공통표준 점검결과	공통표준용어 매핑등록	매핑 공통표준용어명*
표준용어명	영문약어명	데이터타입	데이터 길이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비표준	① 추천용어로 등록 / ② 직접 등록 / ③ 예외처리	(매핑필요)

▼

① 추천용어로 등록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매핑완료	-	종료일자 / END_YMD / CHAR / 8
② 직접 등록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매핑완료	-	종료일자 / END_YMD / CHAR / 8
③ 예외처리	*종료일*	END_YMD	*VARCHAR*	*100*	예외처리	※ 관리 중인 DB표준과 공통표준용어의 의미가 다르거나, 예외처리해야하는 경우에만 활용	-

* 비표준 데이터와 매핑되는 공통표준용어의 '표준용어명' 또는 '영문약어명'을 포함하여 관리

※ 공통표준 준용점검 결과가 '비표준'인 용어는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서 '매핑등록' 기능을 활용하여 일괄·개별로 매핑 공통표준용어명을 작성할 수 있음

- 단, 신규 구축 및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을 통해 DB표준용어 전체가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하여 관리 대상이 없을 경우 만점(1점) 부여(표준화 활동 증빙자료 별도 요청 가능)

[제출자료]

■ **(기준1)**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표준관리 메뉴)에 등록된 기관표준 및 DB표준(표준용어, 표준단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으로 평가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표준관리 메뉴)에 등록된 DB표준과 DB표준적용 점검 결과를 자동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3)**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표준관리 메뉴)에서 수행한 DB표준 비표준 매핑 결과를 자동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2-①-4. 데이터 구조관리(배점2점)

평가대상 DB의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을 실제 DB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있는지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데이터 구조 정의	1점
2	데이터 구조 현행화	1점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데이터 구조 정의

- DB별 '데이터베이스정의서',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을 구성하는 표준관리 항목*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등록 여부 평가

* 항목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기관명, 한글 DB명 또는 영문 DB명, DBMS 정보, **(테이블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한글 테이블명, **(컬럼 정의서)** 영문 테이블명, 영문 컬럼명, 한글 컬럼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영문 DB명, 설명

①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1점	0.1점
미등록	0점	0점

② 테이블 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3점	0.3점
미등록	0점	0점

③ 컬럼 정의서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5점	0.5점
미등록	0점	0점

④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평가기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평가항목 포함 등록	0.1점	0.1점
미등록	0점	0점

①, ②, ③, ④ 점수의 합

■ **(기준2) 데이터 구조 현행화**

- 데이터 구조 산출물('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을 실제 DB의 구조에 맞게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평가

※ 데이터 구조 현행화율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데이터구조 완전성 점검과 산출물 현행화(메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① 테이블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내 테이블 전체 개수}} \times 100$

② 테이블정의서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테이블정의서 테이블 정보 일치 개수}}{\text{전체 테이블정의서 내 테이블 개수}} \times 100$

③ 컬럼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컬럼 정의서 컬럼 정보 일치 개수}}{\text{물리DB 내 컬럼 전체 개수}} \times 100$

④ 컬럼정의서 현행화율(%) = $\frac{\text{물리DB와 컬럼 정의서 컬럼 정보 일치 개수}}{\text{전체 컬럼정의서 내 컬럼 개수}} \times 100$

①, ②, ③, ④ 중 낮은 비율 적용

*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테이블, 컬럼을 의미

평가 기준	점수
현행화율 90% 이상	1점
현행화율 80% 이상 ~ 90% 미만	0.7점
현행화율 70% 이상 ~ 80% 미만	0.4점
현행화율 70% 미만, 미수행	0점

[제출자료]

■ **(기준1)**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표준관리 메뉴)에 등록된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으로 평가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준2)**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표준관리 메뉴)에 등록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의 데이터 구조 점검결과를 자동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2-①-5. 데이터 연계관리(배점2점)

내·외부기관의 정보시스템(DB)과 연계되어 송·수신하는 데이터의 목록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여부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A기관	B기관
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1점	1점
2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1점	-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 내·외부 기관(DB) 간 송·수신하는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 여부 평가

※ 필수항목(12종)인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항목 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을 정의해야 함

평가기준	점수
모든 필수항목을 포함하여 정의	1점
일부 필수항목만 포함하여 정의	0.7점
미정의	0점

- 별도의 정의서 형태가 아닌 연계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되는 경우도 인정함
 · 연계 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캡쳐 화면(연계데이터의 정합성 점검 및 모니터링 화면)도 인정 (단, 캡쳐 화면에 12개 필수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캡쳐 화면에 부족한 항목이 있는 경우, 부족한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
- 연계데이터의 인정 범위 : 내부(기관 내 시스템 간) 및 외부(기관 간) 연계 대상
- 연계 형태가 API인 경우에도 12개 필수항목을 정의해야 함
- 연계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논리적** 시스템 구성도(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의 개념도로 RFP, 사업계획서 등에 기술되어 있는 구성도)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단순한 **물리적** 시스템 구성도(서버, H/W 구성도, S/W구성도, N/W구성도)를 제출하여 내·외부 정보시스템(DB)와의 연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준2) 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점검 내역**(점검일시, 연계건수, 검증내역 등) 및 **오류발생 시 조치 내역(**오류발생 내역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관리 여부 평가

※ 연계데이터 오류 발생이 없는 경우, 연계 데이터 현황 점검 내역만 포함되어도 만점 부여

※ '기준1 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지표에서 '해당없음'(N/A)으로 처리된 경우 기준2 지표도 '해당없음'(N/A) 처리됨

평가기준	점수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모두 수행	1점
현황 점검, 오류 조치 중 하나만 수행	0.5점
미수행	0점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또는 증빙자료(연계 솔루션 캡쳐 화면 등)

■ **(기준2)** 연계데이터 현황 점검 및 오류 조치 내역

○ 「2-② 데이터 값 관리」 지표

지표 정의	각 기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DB의 품질 제고를 위해 수행하는 품질진단 기준 설정 및 오류 보완 조치 등 데이터 값의 품질개선 활동을 평가		
배점	**18점** (※ 기초, 기타공공 16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김재성 책임(053-230-1539)**		

2-②-1. 데이터 품질진단(배점8점)

DB 품질진단 대상 테이블과 컬럼을 식별하고, 진단대상 컬럼에 대해 법령·지침·업무규정 등에 따라 데이터 검증 및 진단기준을 정의하고 품질진단 수행 여부를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A기관	B기관
1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4점	4점
2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4점	2점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text{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2)} \text{ 합계}}{\text{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품질진단 기준 정의 및 진단

- DB 품질진단을 수행할 **테이블 및 컬럼**을 **선정**하고, 진단 대상으로 선정한 **모든 컬럼**에 대해 **진단기준**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진단 수행률 = 진단 대상 테이블 수행 비율 x 진단 대상 컬럼 수행 비율

※ (예시) 진단대상 테이블 10개 중 9개 수행(90% 충족), 진단 대상 컬럼 100개 중 98개 수행(98% 충족)일 경우,
진단 수행률 = 90% x 98% = 88.2%

평가기준	점수
진단 수행률 100%	4점
진단 수행률 90% 이상 ~ 100% 미만	3.5점
진단 수행률 80% 이상 ~ 90% 미만	3점
진단 수행률 70% 이상 ~ 80% 미만	2.5점
진단 수행률 70% 미만	0점

- **품질진단 기준**은 품질진단 대상 컬럼에 매핑되어 관리되어야 함
 · 진단기준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기준(16개 항목) ※ [참고1]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42쪽)
 · 진단대상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해당하는 전체 테이블 및 컬럼 ※ [참고2] 품질진단 범위조정 및 절차(43쪽)
- 대용량 DB 등 품질진단 수행 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진단대상(테이블 및 컬럼)을 행정안전부·NIA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협의 조정된 경우, 진단 대상 모수에서 제외)

■ (기준2) 품질진단 규칙(BR) 정의 및 진단

- 법령·지침·업무규정 등에 위배되는지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해 **업무규칙(품질진단 규칙)**을 **정의하고 진단**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평가기준	점수	
	A기관	B기관
업무규칙 8개 이상 정의·진단	4점	2점
업무규칙 5개 이상 ~ 7개 이하 정의·진단	3점	
업무규칙 2개 이상 ~ 4개 이하 정의·진단	2점	
업무규칙 1개 정의·진단	1점	1점
업무규칙 미적용	0점	0점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 **업무규칙(BR) 정의서**에는 필수적으로 '업무규칙명', '업무규칙내용', '스크립트', '근거규정'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업무규칙의 근거규정은 반드시 평가대상 DB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해야 하는 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으로 구체적이어야 함
 · 업무규칙의 근거 규정이 없는 홈페이지, 내부업무 시스템 등은 자체적으로 DB별 업무규칙을 관리하는 '매뉴얼', '가이드', '지침' 등을 근거로 진단을 수행하여도 인정

※ 업무규칙으로 정의되는 테이블은 반드시 품질진단 도구에서 '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함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진단결과 보고서**(진단결과 보고서 내 품질 진단 기준 및 정의 내역 활용)
※ 데이터 품질진단 대상 정의 및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정의 내역 포함

■ **(기준2) 진단결과 보고서**(진단결과 보고서 내 품질진단 규칙 정의 내역 활용)
※ 업무규정에 따른 품질진단 규칙 정의 내역 포함*
* 품질 진단도구 내 '업무규칙 기본정보'의 근거 규정 내용을 기술하였다면 '업무규칙 정의서'는 미제출 가능

2-②-2. 데이터 오류율(배점10점)

평가대상 DB의 데이터 오류율(최종) 진단 및 평가

[평가 방법]

[평가기준]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 DB의 데이터 오류율 진단 및 평가

*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16개: 시간순서 일관성, 선후관계 정확성, 논리관계 일관성, 계산식, 참조관계, 글자 깨짐, 공백 및 특수문자, 필수값, 중복데이터, 도메인(날짜, 번호, 여부, 코드, 금액, 수량, 율)) 및 설정한 업무규칙으로 오류율 측정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데이터 오류율 산정 기준 :

데이터 품질 오류율(%) = $\frac{\text{오류데이터 건수}^{b)}}{\text{평가 대상DB 전체 데이터 건수}^{a)}}$ X 100

a) 평가 대상DB 내 품질진단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건수
b) 평가 대상DB 내 품질진단을 수행한 전체 데이터 중 오류가 발견된 건수

평가기준	점수
오류율 0.01% 미만	10점
오류율 0.01% 이상 ~ 0.1% 미만	8점
오류율 0.1% 이상 ~ 0.5% 미만	6점
오류율 0.5% 이상 ~ 1.0% 미만	4점
오류율 1.0% 이상	2점
미수행	0점

※ (**A기관)**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B기관)** 기초, 기타공공기관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 대상 DB가 중복되는 경우 공간정보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DB의 점수산정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에서만 평가대상 DB로 선정된 경우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품질 오류율)를 해당 DB의 점수로 산정하고, 지표점수 산정 시 반영

※ 공간정보 DB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최종본)

※ 품질진단 기준 및 정의, 업무규칙 정보와 오류율 산출을 위한 진단 기준 정보는 같아야 함

○ 「2-③ 진단결과 조치」 지표

지표 정의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계획수립 및 조치 활동 여부를 평가		
배점	10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홍종윤 주무관(044-205-2491)**, NIA **김재성 책임(053-230-1539)**		

[평가 방법]

[평가기준]

기준	내 용	배점
1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4점
2	개선조치 이행률	6점

[점수산정]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평가 대상 DB의 점수 합계}^{2)}}{\text{평가 대상 DB 수}^{1)}}$

1) 평가대상 DB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평가대상 DB 수
2) DB별 점수 산정 기준

■ (기준1)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 DB의 표준, 구조, 연계, 데이터 값에 대한 품질 진단결과(데이터 표준관리, 데이터 구조관리, 데이터 연계관리, 데이터 품질진단)를 분석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평가
- 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과제 정의 산정 기준

평가기준		점수
품질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 수립	데이터 값 오류율, 표준, 구조, 연계관리 개선 과제 모두 포함	4점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 과제만 포함	3점
	데이터 값 오류율 개선 외 과제(표준, 구조, 연계관리 모두)만 포함	2점
개선계획 미수립		0점

※ 각 지표별 충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개선할 오류가 없는 DB의 경우 만점 부여
* 데이터 표준관리(데이터 표준 정의 조건 및 표준 적용률 100% 충족), 데이터 구조관리(데이터 구조 산출물 관리 조건 및 현행화율 100% 충족), 데이터 연계관리(관리 정보 정의 및 송·수신 내역 관리 조건 모두 충족), 데이터 품질진단(진단기준 충족률 100% 및 업무규칙 8개 이상 설정·진단), 데이터 오류율(오류율 0%)

※ '개선조치 이행률 지표로써 올해 인정받을 수 있는 개선과제'의 이행 기한의 완료일은 기관별 자체평가 마감일까지로 설정해야 인정되므로 개선계획수립 시 유의해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 대상 DB가 중복되는 경우 공간정보 품질진단 및 오류 데이터 건수를 합산하여 해당 DB의 점수산정

※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국토부 소관)에서만 평가대상 DB로 선정된 경우 공간정보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 결과(품질 오류율)를 해당 DB의 점수로 산정하고, 지표점수 산정 시 반영

※ 공간정보 DB 품질관리 수준진단·평가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문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기준2) 개선조치 이행률**

-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평가

※ 데이터 품질 점검·개선 내역 등 개선조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함

- 평가 산식 :

· 점수 = $\frac{\text{수행완료 과제 건수}^{b)}}{\text{개선계획 과제 건수}^{a)}}$ X **배점**

a) '24년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중 과제완료 시점이 '24.10.1.~'25.9.30.인 과제건수
+ '25년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중 완료시점이 '25.9.30.까지인 과제 건수

b) a)의 개선계획의 개선과제 건수 중 '25.9.30.까지 개선 완료된 과제 건수

[제출자료]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의 자료 제출 필요

■ **(기준1)** 데이터 품질 개선계획(공문서)

■ **(기준2)** 개선조치 결과보고서(공문서)

※ 데이터 품질개선 조치결과 및 과제수행 증빙, 내부결재 등 공문서* 제출

* 기안자와 결재자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결재자는 상위 결정권자이어야 함

참고1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구분	진단유형	진단유형 설명	DB 진단
정합성 진단	시간순서 일관성	시간순서 관계를 갖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선후관계 정확성	선후관계를 가지는 컬럼 간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논리관계 일관성	컬럼 간 논리적 일관성 오류를 측정	O
	계산식	계산값이 정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측정	O
	참조관계	참조하는 컬럼과 참조되는 컬럼 사이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O
완결성 진단	글자깨짐	컬럼명, 데이터 값에 깨진 글자 또는 완성된 한글이 아닌 데이터 오류 측정	O
	공백, 특수문자	컬럼명, 데이터 값에 불필요한 공백과 특수문자가 입력된 오류 측정	O
	필수값	데이터의 특성 상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값은 누락 없이 제공되어야 함	O
	중복데이터	DB 내 두 개 이상 테이블(또는 파일)에 존재하는 동일한(중복) 데이터의 값 일치 여부 측정	O
유효성 진단	날짜 도메인	날짜 데이터값이 유효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형식이 표준을 위배한 데이터 오류 측정	O
	번호 도메인	번호생성 규칙을 위배한 경우 오류 측정	O
	여부 도메인	컬럼의 저장된 값이 유효값(2개의 값)의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 오류 측정	O
	코드 도메인	원천 DB에서 표준으로 정의한 코드값 이외 데이터 오류 측정	O
	금액 도메인	금액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 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수량 도메인	수량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율 도메인	율 데이터 이외 문자가 입력되어있는 컬럼의 데이터 오류 측정	O

참고2 품질진단 범위 조정 및 절차

❍ 활용성 높은 주요 데이터 중심으로 품질진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품질진단 **범위조정 요청 시, 검토 후 범위조정**

- **(테이블, 컬럼 제외)** 임시, 백업, 로그 기록, 뷰, 시스템관리 테이블 등에 대해 **품질진단 제외 가능**(품질진단 도구에서 사유 입력, 공문 제출 불필요)
- 과거 데이터의 단순 저장(보존), 법령이나 관련 업무 지침 변경으로 데이터 관리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 검토 및 심의 후 진단범위 조정 가능(공문 제출 필요)

※ [붙임3] 'DB 진단 범위조정 신청서'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

구분		예시
데이터 범위 조정 (공문제출 필요)		▶ 과거 데이터를 기록 차원에서 단순 보존하고 있는 경우 예시) 과거 수기 기록 행정 데이터의 단순 보존 등
		▶ 법령, 지침, 고시 등의 변경이나 기관 수행 업무의 변경 등으로 데이터를 더이상 수집 및 관리하지 않고 단순 보존만 하는 경우
		▶ 삭제된 데이터를 단순 보존하는 경우 예시)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지만, 삭제된 데이터를 보존하는 경우
진단대상 테이블 및 컬럼 조정 (공문제출 불필요)	임시테이블	▶ 개발 등의 목적으로 임시 생성된 테이블 예시) _TEMP, _TMP, _TEST 등
	백업 테이블	▶ 백업의 목적으로 데이터를 중복 생성한 테이블 예시) _BAK, _BACKUP, 특정 날짜(_20250202) 등
	로그 기록 테이블	▶ 시스템의 로그를 기록한 테이블 예시) 일반적으로 _LOG 등의 명칭을 포함
	뷰 테이블	▶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가상 테이블 예시) _VIEW, _VW 등
	시스템 관리 테이블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저장하는 등 시스템 관리의 목적으로 생성된 테이블 예시) SYS, DB 시스템 테이블, PLAN(실행계획) 테이블 등

※ 이외 기타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1600-2187)에 문의

❍ **(절차)** DB 담당자가 진단범위 조정 신청서(붙임)를 작성해서 '기관별 자체평가 마감' 7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공문으로 제출, 검토 및 심의 후 기관 및 DB담당자에게 최종 확정 통보(공문)

단계	진단범위 조정 요청(공문)	⇨	검토 및 심의	⇨	최종 확정(공문)
수행 내용	테이블/컬럼 : 품질진단 도구에 사유 입력 진단범위 : 조정 신청서 작성		제외 사유 및 진단범위 조정 검토		검토 결과 기관 통보

□ DB 진단 범위조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신청DB명			
	담 당 자		부 서	
	연락처(전화)		이 메 일	
DB 운영기관 정보	기 관 명			
	담 당 자		부 서	
	연락처(전화)		이 메 일	

조정 이유
(예시) 해당 DB는 25년도 법률 개정으로 인해 XX 테이블의 데이터의 형식이 변경되었음 따라서, 진단 대상 범위를 법률 개정 시점 이후로 조정하여 품질진단을 수행하고자 함

범위 조정안	【조정방안 선택】 아래 방안 중 하나 이상 □ 진단대상 테이블 및 컬럼 조정 : 전체 영역 중 특정한 영역(주제영역)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 제시 - 진단하고자 하는 주제영역, 해당영역을 선택하는 사유 등 □ 진단 기간 조정 : ex) 최근 ○년 데이터 (3년, 5년 등 특정 기간으로 진단 범위 조정) □ 기타 *(예시)* *■ 진단 기간 조정* *조정 테이블 : xxxxx_tbl* *조정 기간 : 2025-05-01 ~ 현재*
신청기관 제시안	【조정방안 기술】 위에서 선택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예시)* *조정 테이블 xxxxx_tbl의 update_dt 컬럼값이 2025-05-01 이후인 데이터만 진단* *(from xxxxx_tbl where update_dt > '2025-05-01')*

3. 분석 · 활용 영역

< 평가목적 >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수립 및 행정·대국민 서비스 개선 추진, 데이터기반행정 역량·문화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25**	**25**	**25**	**25**	**25**	**25**	**25**	-
①-1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	10	10	15	10	15	15	15	**정량**
②-2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15	15	10	15	10	10	10	**정성**
②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10**	**10**	**12**	**12**	**12**	**12**	**12**	-
②-1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	5	5	6	6	6	6	6	**정량**
②-2 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5	5	6	6	6	6	6	
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15**	**15**	**15**	**15**	**15**	**15**	**15**	-
③-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	2	2	2	2	2	2	2	**정량**
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노력	5	5	5	5	5	5	5	**정성**
③-3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8	8	8	8	8	8	8	

※ **①지표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 **B기관**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②지표 : A기관 :** 중앙, 광역 / **B기관** :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3-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지표

지표 정의	데이터를 수집·결합·분석하여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기관 정책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		
배점	25 점	방식	정량·정성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이선영 사무관(044-205-2296)**, NIA **곽성일 수석(053-230-1592)**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방식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	정량	10	15
2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정성	15	10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 **B기관**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3-①-1 데이터 분석·정책활용 실적(배점 [A기관] 10점 / [B기관] 15점)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결합하여 목적에 부합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의 정책이나 대국민 서비스 등에 활용한 실적 점검

[평가방법]

[평가기준]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에 분석사례로 등록하고 **최종 승인(등록완료)** 된 과제 건수로 평가

※ 분석시스템에 기관사례 등록 첨부문서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하되, 비공개 시 사유 명시 필요

[필수작성 항목]

①분석기간, ②분석목적(목표), ③분석방법, ④활용데이터, ⑤분석결과, ⑥ 정책활용 결과(계획)

※ 세부 작성 예시 및 등록 방법은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 등록 화면을 통해 안내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등록 시 필수 작성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첨부한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에서도 다름없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text{실적 과제 수}}{\text{목표 과제 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과제 수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 ※ 기관유형별 정원 기준 구간 상이

1) 중앙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정원기준	목표과제 수
~200명	2건
201~400명	4건
401~600명	6건
601~800명	8건
801~1,000명	10건
1,001명~	12건

2) 광역자치단체

정원기준	목표과제 수
~1,000명	3건
1,001~1,500명	6건
1,501~2,000명	9건
2,001~2,500명	12건
2,501~3,000명	15건
3,001명~	17건

3)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정원기준	목표과제 수
~400명	1건
401~600명	2건
601~800명	3건
801~1,000명	4건
1,001명~	5건

< 정원기준 >

▣ 정원기준 : 2024년도 확정 정원

▷ 정원기준은 2024년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를 위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라 확정된 기관의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기준으로 함

▷ 정원 변동이 필요한 기관, 전년도 미확정 및 신규 평가대상 기관은 정원 확정 기간 내 정원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정원 증빙자료 :** 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제외직군·직렬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식 자료

- (예시) 직제 시행규칙, 조례, 공시(ALIO, 클린아이시스템), 기관 내부결재 문서 등 정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자료
- (정원 필수 포함 직군·직렬) 일반직, 사무직, 전산직, 회계직, 행정직, 연구직 등
- (정원 제외 가능 직군·직렬) 공무직(시설·미화·경비 등), 상담직, 소방직 등 비사무직

▷ 정원 증빙자료 미제출 등 기관의 사유로 정원이 **미확정된 경우 해당 기관 유형의 최대 정원 구간을 적용**

※ 2024년도 확정 정원 확인 방법, 정원 확정 요청 절차 및 기한 등은 5월중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공지사항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실적인정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분석 및 정책활용 결과(계획)에 대한 내부결재일 기준(공식문서 내 정확한 날짜 명시)

■ **'25.9.30일까지 시스템에 최초 등록요청**된 분석과제 중 **'25.10.31일까지 승인**을 받아 최종 등록완료된 분석과제만 실적인정

※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25년 10월 31일까지 보완을 완료하고 승인된 등록완료 과제만 실적으로 인정

[제출방법]

■ 제 출 처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

■ 제출자료

① 과제별 결과보고서(필수작성항목 내용을 포함한 상세 보고서)

② 증빙자료(메모보고,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

※ ① ② 모두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 등록경로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insight.go.kr)→로그인→분석사례→분석사례 등록

※ 변경된 지표 및 등록 절차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 예정('25.4월말)으로 기존에 등록된 분석사례는 수정 등록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등록 방법은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공지 사항 및 사용자 매뉴얼 참고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소속기관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 소속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평가대상이 아니고, 기관 정원에 소속기관을 포함한 경우 가능

o 지난 연도 실태점검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과제의 실적을 제출한 경우

※ 활용 데이터, 목표, 정책활용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제출 가능

o 필수작성항목이 제출자료(결과보고서, 공문 등)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o 공모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타 기관의 분석 과제를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경우는 타 기관의 실적으로만 인정

※ (예시) NIA 공공빅데이터분석사업의 경우 NIA 예산이 집행되었더라도 수요기관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사업으로 수요기관 실적으로 인정(NIA 실적 불인정)

o 동일 주제의 다수 건을 실적으로 제출한 경우, 실적은 1건만 인정

o 직접적인 데이터 분석이 아닌 정보시스템 구축, 연구성 과제, 설문조사 등의 과제를 제출한 경우

※ 상기 과제 내에 데이터 분석 과정과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만을 구체적으로 발췌하거나 별도의 분석 과정을 거쳐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 입력 요건에 맞게 등록 시 인정

o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지표 등 타 지표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유의사항]

o 실적인정 기간 내(2024년 9월 1일 ~ 2025년 9월 30일) 분석 수행과 정책활용을 모두 완료한 건만 원칙적으로 본 지표의 실적으로 인정. 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과제는 인정

① 실적인정기간 이전의 분석과제에 대한 정책활용 성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난 실태점검에서 정책활용 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은 분석 과제 중 분석수행 기간이 '23년 이후 과제만 인정

② 정책활용이 시점상 계획 단계일 때, 예산 반영이나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담은 보고서와 내부결재를 득한 과제만 인정

3-①-2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배점 [A기관] 15점 / [B기관] 10점)

기관이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적절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일련의 과정과 핵심적인 성과에 대한 정성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활용한 실적 및 노력의 수준**에 대해 **15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평가

*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의 경우 10점 만점 기준

o 데이터 분석 주제의 발굴, 분석 수행, 정책 활용,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으로 수행된 수준

o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관의 정책이나 대민 서비스 개선 등에 적절히 활용하고 얻은 혹은 기대하는 성과의 수준, 기관 내 노력과 활동의 수준 등

[실적인정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제출 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보고서 (**[첨부5]** 작성양식 참고)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

㉯ 과제별 분석결과보고서, 정책활용 보고서 등

※ **증빙자료는 ㉮,㉯ 모두 제출해야 실적 인정**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인정 기간('24.9.1.~'25.10.31.) 내 수행한 정책활용 노력과 성과가 아닌 경우

※ 증빙자료 공식 문서 내 정확한 수행기간이 확인되어야 함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거나 증빙자료 없이 보고서만 제출한 경우

o 결과물과 증빙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o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지표 등 타 지표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 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평가 착안사항]

구분		착안사항
노력 및 성과		o 데이터 분석 주제의 발굴, 분석 수행, 정책 활용,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체계적인가 o 데이터분석 결과를 기관의 현안 해결, 중점사업,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가
주요 과제 분석·활용	추진배경 및 목표	o 과제 추진의 필요성이 명확하고 정책적 시급성이 인정되는가 o 기관 및 사회의 현안 해결, 서비스 개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제시되었는가 o 분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범위와 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가
	활용 데이터	o 활용한 데이터가 분석 목표 및 과제 해결에 적합한가 o 분석을 수행하기에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고, 품질이 적절한가 o 데이터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으며 최신성이 확보되었는가
	분석과정	o 자체분석을 실시한 경우 분석 목표에 따라 적절한 분석기법이 활용되었는가 o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표준분석모델, 온라인 분석모델 등)을 활용한 경우, 해당 모델이 분석과제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 o 데이터 편향, 오류 등 분석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o 분석결과가 검증 가능하며, 재현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술되었는가 o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등 단순 통계 조사에서 벗어나 심층적인 데이터 분석이 수행되었는가
	분석결과	o 추진배경 및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가 o 분석결과가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o 분석 결과의 해석이 타당하며,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설명되었는가 o 분석 기법과 활용 데이터가 실제로 분석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는가
	정책활용 성과	o 분석 결과가 과학적 의사결정, 업무자동화, 사회문제해결, 행정·대민서비스 개선 등 기관의 주요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가 o 정책활용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는가 o 정책 활용의 성과를 정량적으로도 측정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가
운영 및 개선 방안		o 정책활용 성과의 지속성 및 확산 가능성이 있는가 o 분석결과의 정책 반영 후 효과를 측정·분석하기 위한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o 사후관리 방안 및 예산 수립방안이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한가

○ 「3-②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지표

지표 정의	전직원 대상 AI·데이터 교육 수료, AI·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 노력을 평가		
배점	**10점** (※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2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오현준 주무관(044-205-2288)**, NIA **이연주 수석(053-230-1579)**, **헬프 데스크(053-230-1956)**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A기관	B기관
1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 실적	5	6
2	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5	6

※ **A기관 :** 중앙, 광역 / **B기관** :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3-②-1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교육 이수실적(배점 [A기관] 5점 / [B기관] 6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분석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수율)에 대해 평가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AI\cdot 데이터\ 분석\ 교육\ 수료자}{기관\ 정원*}$

* **기관 정원 : '2024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7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 **평가배점**

평가 배점					
	A기관	5점	3점	1점	0점
	B기관	6점	4점	1점	0점
교육 이수율* (정원 대비)		60% 이상	40% 이상	20% 이상	20% 미만

*교육이수율: 소수점 이하 절사

[실적인정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교육실적 명단(엑셀)

※ 아래 참고사항의 [증빙자료 작성 양식] 에 따라 작성

② 증빙자료

㉮ 기관 자체 교육일 경우 내부 품의문서(교육계획, 교육결과보고) 참석사인본, 사진 등 증빙(PDF)

㉯ 외부 교육기관 수료인 경우 교육이수증 제출

※ ①②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①은 엑셀파일, ②는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증빙자료 작성 양식]

o 전 직원 대상 AI·데이터 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로 제출)

순번	부서명	성명	직급	교육기관명	교육명	수료일

※ 교육이수자는 동일인인 경우 1인(1건)만 인정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사업설명회, 컨퍼런스 등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o 실적인정 기간 내 수료한 교육이 아닐 경우

[교육 구분]

■ **'전 직원 대상 교육'만 해당하며, '전문교육'은 3-②-2 지표에서 인정**

o (전 직원 대상 교육) AI·데이터 분석의 이해도 함량을 목표로 기본 이해 수준 교육

※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이해, AI 트렌드, AI 윤리, AI 툴 활용 보고서 작성 등

o (전문교육) 기본 이해수준 이상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이론·기술교육

※ 데이터 분석도구(Python, R, SQL) 실습, AI 개발(머신러닝, 딥러닝, RAG 등), AI 서비스 기획, 해커톤 등

※「참고」(p.55)에서 (트랙1) AI활용은「전 직원 대상 교육」에 해당 (트랙2)~(트랙4)는「전문교육」에 해당

3-②-2 AI·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배점 [A기관] 5점 / [B기관] 6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의 AI·데이터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 실적 평가

① **(AI·데이터 분석 자격증)** AICE, AI-POT, 데이터분석준전문가, 데이터분석전문가, 빅데이터분석기사, 행안부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 인증자, AI챔피언* 등 관련분야 자격만 인정

* 행안부에서 개발·제공하는 범정부 AI자격검증도구로 '25.6월 시범운영 예정

※ 컴퓨터활용, 정보처리기사, 네트워크분석기사 등은 불인정

② **(전문교육)** 전 직원 대상 리터러시, 동향소개 등 기본 이해 수준의 교육은 불인정하며 **2일 이상(1日 최소 4시간 이상 한정) 집합교육 이수자** 대상 인정

※ **전문교육은 오프라인만 인정**(단, 온라인 영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실시간 비대면 집합교육은 인정)

[점수산정]

■ **평가산식 :** 「AI·데이터 분석 자격증① 취득자」 + 「전문교육② 이수자」

※ 양성 인원 수에 대하여 아래의 평가배점 기준별 구간에 따라 점수 부여

■ **평가배점**

평가 배점 / 정원 규모*		5점	3점	1점	0점
	A기관				
	B기관	6점	4점	1점	0점
374명 이하		1명	-	-	미양성
375명부터 624명까지		2명	1명	-	
625명부터 749명까지		3명	1명	-	
750명부터 874명까지		3명	2명	1명	
875명부터 1,124명까지		4명	2명	1명	
1,125명부터 1,249명까지		5명	2명	1명	
1,250명부터 1,374명까지		5명	3명	1명	
1,375명부터 1,624명까지		6명	3명	1명	
1,625명부터 1,749명까지		7명	3명	1명	
1,750명부터 1,874명까지		7명	4명	1명	
1,875명 이상		8명	4명	1명	

* **기관 정원 : '2024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6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실적인정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9월 30일

※ 전문교육 이수증(수료증) 및 자격증 확인서 등에 기입된 취득 날짜가 실적인정 기간 내여야 함

※ 자격증은 '24년 9월 이전 취득이어도 실적으로 인정

※ 행안부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양성과정 인증자('23년, '24년)는 자격증 실적으로 인정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AI·데이터분석 자격증 취득자 명단(엑셀)

② AI·데이터분석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

③ 증빙자료

㉮ 자격증 취득자 : 자격증 사본 제출(PDF)

㉯ 전문교육이수자 : 교육이수증, 오프라인 교육임을 확인하기 위해 이수한 교육안내물

※ ①②③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①②는 엑셀파일, ③은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증빙자료 작성 양식]

① AI·데이터분석 자격증 취득자 명단(※엑셀파일로 제출)

순번	부서명	성명	직급	자격증 명칭	취득일자

* (별첨 증빙자료) 순번대로 **자격증 사본 제출(행안부 전문인재 인증자는 명단만 제출)**

② AI·데이터분석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엑셀파일로 제출)

순번	부서명	성명	직급	교육명	교육일자	수료일

* (별첨 증빙자료) 순번대로 **교육 이수증** 및 오프라인 교육 확인을 위한 **교육 안내물(소개자료) 제출**

※ 상기 양식에 따라 (1) 자격증 취득자 명단, (2)전문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1개의 엑셀 파일 안에 시트(sheet)로 구성하여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사업설명회, 컨퍼런스 등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o 실적인정 기간 내 수료한 교육이 아닐 경우

[교육 구분]

■ **'전문교육'만 해당하며, '전 직원 대상 교육'은 3-②-1 지표에서 인정**

o (전문교육) 기본 이해수준 이상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습·이론·기술교육

※ 데이터 분석도구(Python, R, SQL) 실습, AI 개발(머신러닝, 딥러닝, RAG 등), AI 서비스 기획, 해커톤 등

o (전 직원 대상 교육) AI·데이터 분석의 이해도 함양을 목표로 기본 이해 수준 교육

※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이해, AI 트렌드, AI 윤리, AI 툴 활용 보고서 작성 등

참고 2025년 행정안전부 AI · 데이터분석 교육 과정 소개

□ 데이터분석 위주의 교육을 전면 개편하여 **AI·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대상별·수준별 4개 과정**(18개 과목)개발 및 교육 운영(5월예정~)

- AI활용, AI융합, AI개발 과정의 **12개 과목**은 **표준과정으로 개발**하고 **온라인 컨텐츠**는 나라배움터, 데이터역량강화학습시스템에 **탑재·개방**

< 표준 교육과정 커리큘럼(안) >

구 분	과 정 명	대 상	목 적
기본과정	(트랙1) AI활용	전 직원	AI를 행정 업무에 적극 활용
기술융합	(트랙2) AI융합	실무자	AI를 행정에 융합하는 기획 역량 배양
	(트랙3) AI개발	IT담당	AI 모델·데이터분석에 대한 기술 역량 배양
전문인재	(트랙4) AI마스터	IT담당	기관내 AI 기반 행정혁신 활동 리딩

< 표준 교육과정 교육과정(안) >

(트랙1) AI활용	(트랙2) AI융합	(트랙3) AI개발	(트랙4) AI마스터
4개 과목	3개 과목	5개 과목	6개 과목
① AI 리터러시	⑤ 노코드 데이터분석 * 오렌지3, PowerBI 등	⑧ AI기반 데이터 분석·활용 * SQL, QGIS, OCR·NLP 등	⑬-1. 분석기술교육
② 데이터 리터러시	⑥ AI 행정 융합 기획	⑨ AI 머신러닝·딥러닝 이해 활용	⑬-2. 생성형AI 기술교육
③ 관리자를 위한 AI 리더십	⑦ 비개발자 노코드 AI서비스 구현	⑩ 사례기반 융합 데이터 분석	⑬-3. 개인 프로젝트
④ 생성형 AI 활용 업무 효율화		⑪ 공공 LLM 프롬프트 해커톤	⑬-4. 팀 프로젝트
		⑫ LLM 서비스 개발	⑬-5. 특별교육 및 AI리더십
			⑬-6. 강의·코칭방법

※ **온라인 교육(①,②,③,⑤,⑧,⑨) / 집합교육(④,⑥,⑦,⑩,⑪,⑫.⑬-1~⑬-6)**

※ ① AI리터러시 ②데이터 리터러시 ③ 관리자를 위한 AI리더쉽 과목은 「전 직원 대상 AI·기관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활용 가능(지표 3-②-2,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참고)

※ 트랙1~3과정 온라인 교육의 교육영상 및 교육자료(교안, 실습자료)는 공유·개방 예정으로 기관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활용 가능

「3-③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노력」 지표

지표 정의	기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역량진단 및 개선, AI 도입·활용, 문화 조성 등의 다양한 시책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		
배점	**15점**	**방식**	**정량·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필요)
담당자	**(기준①)**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김나은 주무관(044-205-2292)**, NIA **조용탁 수석(053-230-1546), 헬프 데스크(053-230-1933)** **(기준②)** 행안부 지능정부기반과 **손병규 사무관(044-205-3094)**, NIA **조원선 선임(053-230-1652)** **(기준③)**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허준 주무관(044-205-2475)** ,NIA **김소영 수석 (053-230-1939)**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방식	배점
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	정량	2점
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노력	정성	5점
3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정성	8점

3-③-1 (정량)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배점2점)

기관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 역량진단 추진 실적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 정원*의 50% 이상 또는 100명 이상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실시 여부

* **정원기준 : '2024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7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o '2025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가이드라인*' 제2장을 참고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역량진단 가이드라인 : DATACAPA(datacapa.go.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제공

o 진단결과 분석 보고서에는 진단방식*, 진단점수, 진단점수 산출 방식, 역량 수준, 취약 역량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보고서는 상기 항목을 포함한 자유양식으로 작성

* 진단방식 : DATACAPA를 통한 역량 진단, 기관 자체진단 체계 활용, 용역업체를 통한 진단 등

[실적인정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① 역량진단 추진을 증빙할 수 있는 내부결재 등 공식 문서
② 진단결과 분석보고서
- DATACAPA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설문 문항 자료 포함하여 제출
※ ①, ②를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증빙은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데이터분석활용 역량진단 도구'(행정안전부) URL]

o (외부망 접속 시) datacapa.go.kr
(행정망 접속 시) intra.datacapa.go.kr

[주요 불인정 사례]

o 진단 기간 도과, 진단 방식 근거 등 미제출 시 진단 시행 불인정

3-③-2 (정성)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노력(배점5점)

AI 도입·활용을 통해 행정업무 혁신, 대국민 서비스 제고, 사회문제 해결 등 서비스 개선과 기관(직원) 내부 업무에 활용 등 추진 사례 및 노력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각 기관의 AI 도입·활용을 통한 서비스 제고 등 노력 수준을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

- 아래 유형 및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이 대표하는 실적을 선별하여 최대 3건 제출**

※ 구축·도입 및 활용의 구체적 계획(예산, 추진내용, 일정 등)이 수립된 경우에도 실적으로 제출 가능

<table>
<tr><th>유형</th><th>예시</th></tr>
<tr><td>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td><td>o AI 기술을 도입·활용한 특화 서비스, 기관의 현안(사회문제)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table>
<tr><td>특화 서비스</td><td>▪ 업무에 특화되어 행정 처리를 지원하는 분석·선별·예측 서비스, 위험·부정 등 방지를 위한 감지·심사 서비스 등</td></tr>
<tr><td>대국민 서비스</td><td>▪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및 추천 서비스, 지능형 검색 및 상담 서비스, 실시간 알림·안내 서비스 등</td></tr>
<tr><td>현안(사회문제) 해결</td><td>▪ 재난·안전·복지·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모니터링·예측·대응 서비스 등</td></tr>
</table></td></tr>
<tr><td>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td><td>o 민간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등을 활용한 기관(직원)의 행정업무 생산성·효율성 향상, 창의적 업무환경 조성 지원 등
※ 라이선스(계정)를 도입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기관 내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td></tr>
</table>

[실적인정 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보고서 (**[첨부6]** 작성양식 참고)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o 실적인정 기간('24.9.1.~'25.10.31.) 내 실적이 아닐 경우
- o 보고서(결재문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o AI 기술의 도입이나 활용없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인 경우
- o 정례적인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인 경우

[평가 착안사항]

구분	착안사항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	o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의 구축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이 적절한가 o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는가(또는 법령 개정·정비의 노력이 있는가) o 민간 또는 자체 LLM 도입·활용, 서비스에 활용하는 내외부 데이터 등 서비스 목적 및 환경에 맞게 검토되어 적용되었는가 o AI 도입·활용 결과에 대한 수혜자(국민, 업무담당자 등)의 만족도나 효과성(활용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가(표창, 경진대회 수상 등) o 공공부문의 확산을 위해 타 시스템(서비스)과 연계, 제공 서비스에 대한 안내·공유 등 노력하였는가 o 구축, 고도화,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확보와 계획수립 등에 대한 이행 노력이 있는가
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	o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기관 내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이 있는가 o 효과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가이드 안내, 이용현황 확인, 활용 대표사례 선정·공유 등 체계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o 내부데이터(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보안 규정·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는가

3-③-3 (정성)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배점8점)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다양한 시책* 노력을 **8점 만점** 기준으로 정성 평가

- 아래 유형 및 예시를 참고하여 **기관이 대표하는 실적을 선별하여 최대 5건 제출**

유형	예시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의 활용	o 데이터기반 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 재배치, 역할 분담 강화 등 조직·인력 개선 o 분석·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등
기반조성	o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법·규정 정비, 절차 및 제도 개선 o 전담부서 인력 충원, 예산확보 o 기관 내 성과지표에 분석결과 활용관련 지표 신설 등
문화조성 및 성과확산	o 공모전, 경진대회, 설명회 등 각종 행사 o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o 관련 성과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o 우수사례 공유회, 사례집 발간 등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o 기관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o AI·데이터 분석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채용 o AI·데이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기타	o 상기 유형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기타 노력

[실적인정기간] 2024년 9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고 노력 보고서 (**[첨부7]** 작성양식 참고)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기준일('24.9.1.~'25.10.31.) 내 실적이 아닐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 함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o 공공데이터 제공평가 지표 등 타 지표에 동일한 실적을 제출 한 경우
※ 동일 실적을 여러 지표에서 중복 인정 불가하므로 지표별로 구분하여 제출

[평가 착안사항]

유형	착안사항
공통	o 문화조성, 성과확산 및 홍보, 관리체계 마련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기울여졌는가 o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되었는가 o 특정 부서나 담당자가 아닌 기관 전체적으로 협업하여 추진되었는가 o 기관의 특성 및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책이 추진되었는가 o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결과의 활용	o 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개선 및 발전이 이루어졌는가 o 역량별로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어 활용되었는가 o 활용방안 및 결과가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수준 향상에 실효성이 있는가
기반조성	o 법·규정 정비, 절차 개선, 조직 개편 등의 제도적 노력이 기관의 데이터 활용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가 o 기관장 및 주요 의사결정자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였는가 o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었는가
문화조성 및 성과확산	o 독창적이고 차별성 있는 아이디어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이끌었는가 o 기관의 우수사례를 대내외에 확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는가 o 단순 참여 유도가 아닌 데이터기반행정의 중요성을 조직 대내외로 확산되도록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는가 o 단순 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였는가
AI·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o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의 지원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는가 o 기관 내 전문 인력들이 교육 등을 통해 획득한 역량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가 o 행정안전부에서 공유·개방하는 AI교육과정(AI활용·AI융합·AI개발 과정) 콘텐츠*(「[참고] 2025년 행정안전부 AI·데이터분석 교육 과정 소개」, p.55)를 기관별 자체 교육과정 개발에 활용하였는가 * 25.6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유·개방 예정

4. 공유 영역

< 평가목적 >

모든 기관이 보다 손쉽고 빠르게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공유·활용 수준 및 노력을 평가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 기관	지방 공기업	기타 공공 기관	시도 교육청	
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 이행률	**14**	**14**	**14**	**17**	**14**	**14**	**14**	정량
①-1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4	4	4	7	4	4	4	
①-2 공유데이터 등록 이행률	10	10	10	10	10	10	10	
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10**	**10**	**10**	**10**	**10**	**10**	**10**	정성
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6**	**6**	**6**	**6**	**6**	**6**	**6**	정량
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8**	**8**	**10**	**10**	**10**	**10**	**10**	
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7**	**7**	-	-	-	-	-	
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노력(가점)	**건당 1점 (최대 5점)**							

※ **①지표 :** 중앙, 광역, 기초,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14점** / **공기업·준정부** : **17점**

※ **④지표 :** 중앙, 광역 : **8점** /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10점**

※ **⑤지표 : 중앙, 광역**만 해당 : **7점**

○ 「④-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 이행률」 지표

지표 정의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 촉진을 위해 수립한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의 이행 및 공유데이터 등록 이행 정도를 평가		
배점	**14점** (※ **공기업·준정부** 17점)	**방식**	**정량**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장현석 주무관(044-205-2484), **NIA** 신용국 선임(053-230-1532)		

[세부기준]

번호	세부기준명	방식	배점
1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 **공기업·준정부 7점**	정량	4점
2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정량	10점

④-①-1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배점4점 (※ 공기업·준정부 7점))

'24년에 수립한 연도별 확대목표(테이블 단위)를 기준으로 '25년에 등록할 공유데이터의 목록 생성 정도를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각 기관에서 '24년에 수립한 연차별('25~'26) 공유계획(테이블 단위)에서 '25년 목표 테이블 건수 대비 공유데이터*의 목록 생성 정도를 평가

 * **(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 '24년에 연차별('25~'26) 공유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기관은 메타데이터 중 비공개 테이블을 제외한 테이블의 10%를 기준으로 '25년에 등록할 공유데이터 목록을 설정할 예정

 ※ 테이블건수가 15건 미만일 경우 15건을 설정, 메타데이터 기준일은 '25년 5월 31일 적용

- '23년에 연차별('23~'25) 등록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25년에 등록할 공유데이터의 목록 수립 시 '25년 등록예정 데이터(후보군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반영 필요

- 목록을 구성하는 공유데이터(데이터셋)는 1개 또는 최대 4개까지 테이블을 조합

 ※ 공동활용데이터 관리시스템에 공유데이터 목록 등록 기능 제공

[평가산식]

$$\frac{\text{'25년 공유데이터 목록에 포함된 테이블 건수}}{\text{'25년 목표 테이블 건수}} \times \text{배점}$$

※ 목표테이블 건수는 하한 15건, 상한 300건

※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실적인정 기간] 2024.9.1.~ 2025.7.31.

[제출방법]

- 제 출 처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제출자료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등록경로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로그인 → 공유계획 수립·이행 → 공유목록 등록관리

 * 공유데이터 목록수립은 중앙메타검색, 직접입력 두가지 방법으로 수립 가능

 ※ **7월 31일까지 공유데이터 목록수립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신규 목록생성 불가능

[참고사항]

[유의사항]

- 목표테이블 건수 15건 반영 기관
 - 메타데이터 중 비공개 테이블을 제외한 테이블의 10%가 15건 미만
 - 메타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으나 목표 목표테이블 건수가 15건 미만
 - 메타시스템 미연계 및 미구축 기관 등

4-①-2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배점10점)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지표에서 생성한 데이터 목록을 대상으로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공유데이터의 등록이행 정도를 평가

[평가방법]

[평가기준]

-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지표에서 구성된 '25년 공유데이터 목록을 대상으로 공유데이터를 등록 이행한 정도와 '23년~'24년 미등록 데이터의 등록이행률을 평가
- '25년에 등록할 공유데이터(데이터셋) 건수가 15건 미만인 경우, 15건 이상* 등록 필요
 * 전년도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최소 등록건수 기준을 15건으로 산정
- '25년도 공유데이터 등록 시, '23년에 연차별('23~'25) 등록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25년 등록대상 후보군 데이터를 우선 등록해야 함
 * 시스템 폐기 및 신규 구축등으로 등록계획이 변경된 경우 행안부와 협의 필요
- 행안부에서 배포한 표준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은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한 실적만 인정

[평가산식]

- **공유데이터 목록 15건 이상 기관**

$$\left\{\left(\frac{\text{'25년 공유데이터 등록 건수}}{\text{'25년 공유데이터 목록 건수}}\right)\times 8\right\}+\left\{\left(\frac{\text{미등록 건수 중 '25년 등록 건수}}{\text{'23년 ~ '24년 미등록 데이터 건수}}\right)\times 2\right\}$$

- **공유데이터 목록 15건 미만 기관**

$$\left\{\left(\frac{\text{'25년 공유데이터 등록 건수}}{15}\right)\times 8\right\}+\left\{\left(\frac{\text{미등록 건수 중 '25년 등록 건수}}{\text{'23년 ~ '24년 미등록 데이터 건수}}\right)\times 2\right\}$$

※ 영역점수별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실적인정 기간] 2024.9.1. ~ 2025.9.30.

[제출방법]

- 제 출 처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제출자료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등록경로

o '25년 공유데이터 등록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공유계획 수립·이행 → 공유데이터 등록관리
 * '23년 연차별 등록계획에 따라 '25년 등록대상 후보군 데이터는 일괄로 이관

o '23년~'24년 미등록 데이터 등록

- (후보군 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후보군 관리 → 후보군 등록이행관리
 * '23년 연차별 등록계획에 따라 '23년~'25년까지 등록이행을 완료하기로 행안부와 협의한 데이터
- (자율등록 데이터)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데이터 등록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데이터 업로드를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행안부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을 완료

※ 10월 중 신규로 등록 요청한 데이터는 '25년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

※ '총괄담당자, 업무담당자' 권한인 사용자만 소속기관의 데이터 등록 가능

[참고사항]

[유의사항]

1. **'25년 공유데이터 목록 건수**가 **15건 미만**인 경우, 자율등록 데이터와 합산하여 15건 이상 등록해야 만점 부여

※ 단, '25년 등록대상 데이터를 모두 등록하지 않은 경우, '25년 등록한 자율등록 데이터는 일부 실적만 인정

예시) '25년 공유데이터 목록건수가 10건인 기관

⇒ '25년 등록대상 데이터 10건, '25년 자율등록 데이터 5건 등록 완료

☞ {(10+5)÷15}×8 = 8점

⇒ '25년 등록대상 데이터 9건, '25년 자율등록 데이터 6건 등록 완료

☞ {(9+6)÷15)×8 = 8점(X) ⇨ {(9+5)÷15)×8 = 7.47점(O), 6건의 자율등록 데이터를 등록했으나, 15건에서 '25년도 공유데이터 목록건수(10건)를 뺀 5건만 인정

2. **'25년 공유데이터 목록 건수**가 **70건 이상**인 기관

- 70건 이상의 '25년 공유데이터 등록 시, '25년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만점 부여

예시) '25년 공유데이터 목록건수가 100건인 기관

⇒ '25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80건 등록 완료

☞ (80÷100)×8 = 6.4점(X) ⇨ 8점(O) (70건 이상의 '25년 공유데이터 등록으로 만점 처리)

⇒ '25년도 등록대상 데이터 60건 등록 완료

☞ (60÷100)×8 = 4.8점

3. **'23년~'24년 미등록 데이터 건수**가 **70건 이상**인 기관

- 70건 이상의 미등록 데이터 등록 시, 미등록 데이터 등록이행률 만점 부여

예시) '23년~'24년 미등록 데이터 건수가 130건인 기관

⇒ 미등록 데이터 중 '25년 75건 등록 완료

☞ {75÷130}×2 = 1.15점(X) ⇨ 2점(O) (70건 이상의 미등록 데이터 등록으로 만점 처리)

⇒ 미등록 데이터 중 60건 등록 완료

☞ (60÷130)×2 = 0.92점

4. **'23년~'24년 미등록 데이터 건수가 0건인 기관**은 해당 배점 만점(2점) 처리

5. 등록유형*이 다른 데이터는 다른 유형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25년 공유데이터(목록생성), 자율등록 데이터, 미등록 데이터 중 후보군 데이터

6. 목록을 생성하지 않고 등록한 공유데이터('25년 평가 대상)는 공유데이터 목록을 생성해야 함

○ 「④-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지표

지표 정의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생성, 공유한 기관의 노력 및 실적을 정성적으로 평가		
배점	**10점**	**방식**	**정성**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장현석 주무관(044-205-2484)**, NIA **신용국 선임(053-230-1532)**		

[평가방법]

[평가기준]

■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발굴·생성, 공유한 기관의 노력과 실적(성과)을 정성적으로 평가

- 기관에서 제출한 실적 사례를 평가

※ 공유데이터 설명, 공유데이터 발굴을 위한 노력, 활용성과 등 사례를 작성서식에 맞춰 제출

[평가배점]

■ 제출 사례별 A기관(최대 4건)은 0.5점씩, B기관(최대 2건)은 1점씩 최대 2점 반영

* **A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B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기관별 제출 건수 점수(최대 2점)와 공유데이터 발굴 및 제공 노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

[실적인정 기간] 2024.9.1. ~ 2025.10.31.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①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보고서 (**[첨부8]** 작성양식 참고)

※ 보고서는 작성양식에 맞춰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은 별도의 첨부파일로 제출되어야 함

② 보고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공식 결재 및 보고 문서, 사진 등)

※ 모든 증빙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 제출자료를 평가시스템에 등록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실적 인정기간('24.9.1. ~ '25.10.31) 내의 실적이 아닌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행정·공공기관 간 공유데이터 공유·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평가 착안사항]

▪ (참고) 다음 분야에서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
· 특정 계층·지역·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
·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
·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구분	착안사항
공유데이터 발굴	o 데이터 발굴의 배경과 필요성 등이 적절한가 o 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파악하고 발굴을 위한 노력이 충분한가 * 현재 공유 중인 데이터의 이용현황 및 활용도 등을 분석해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o 데이터의 발굴과정과 연계되어 이용 및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가공 및 분석 등을 통해 생성 후,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이 충분한가 o 비공개 등으로 공유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추가검토 등을 통해 향후 공유 계획이 존재하는가
공유데이터 활용	o 공유한 데이터가 타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 정책 수립, 행정업무 개선, 또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에 기여한 사례가 존재하는가(표창 및 경진대회 수상 등) o 공유데이터를 활용한 예상성과 등이 적절한가
최대실적 및 배점	o 제출 실적건수 점수(정량)와 기관별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정성)한 점수를 합산 - 제출 사례별 A기관(최대 4건)은 0.5점씩, B기관(최대 2건)은 1점씩 최대 2점 반영 * **A기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B기관**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 기관별 제출한 공유데이터 발굴 및 제공 노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8점)

○「④-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지표

지표 정의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여부 및 구축 여부를 평가		
배점	**6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장효정 주무관(044-205-2485)**, NIA **김아름 선임(053-230-1592)**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관별 구축계획에 따라 평가 기간 내 표준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도입 또는 자체 공유시스템 구축·활용 및 구축계획 수립 여부를 평가

[평가배점]

세부기준	배점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기구축·연계 또는 '26년 구축계획 수립	6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미수립	0

※ '26년 구축계획 수립기관은 구축계획 미이행 시 '26년 평가에 감점 적용

[실적인정 기간] 2024.9.1. ~ 2025.9.30.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o **(구축 기관)** 표준시스템 도입 또는 자체시스템 구축·연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구성하여 제출

※ 표준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에서 표준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공유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자체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공유데이터 메타 관리, 개방/공유 데이터 관리,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연계 등 주요기능을 갖추고,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에서 자체 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공유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단, '25년에 연계가 어려운 경우, '26년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연계를 위한 예산확보 등 증빙자료 제출

o **(구축계획 수립기관)** 구축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1개 파일(PDF)로 구성하여 제출

①공유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유 기능, 예산, HW/SW 내역, 구축 일정 등이 포함된 계획서 ②내부 결재 공문, ③공유시스템 구축 예산(안) 관련 증빙자료(국회 또는 시의회 제출문서 등)

※ 증빙자료는 ①②③ 모두 제출해야 인정

※ 자체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경우, 표준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수집·연계 등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국가공유데이터플랫폼에 연계해야 함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제출자료를 평가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 증빙자료 중 공식적인 문서* 없이 계획안만 등록하는 경우

*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실·국장급, 공공기관은 본부장·실장급 결재 문서

[N/A 처리]

■ 기초자치단체 및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공동활용형을 사용하는 공공기관

※ 기관유형에 무관하게 전체기관의 평균점수 적용

[구축기관 증빙자료]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데이터관리 → 나의 데이터 → 기관공유시스템에서 등록한 공유데이터 조회 후 화면 캡쳐



※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26.上) 이후에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된 화면 캡쳐 필요

○「4-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지표

지표 정의	기관별 보유·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한 실적을 평가 *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하는 자료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및 중앙메타관리시스템		
배점	**8점** (※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10점)	**방식**	**정량** ('메타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이예진 주무관 (044-205-2493),** NIA **김수정 주임 (053-230-1573)**		

[평가방법]

[평가기준]

■ 기간 내 기관의 보유DB의 메타데이터 현행화(신규·변경·삭제)정도를 평가
※ 연 2회(6월, 10월)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평균치를 평가점수로 적용

[평가산식]

$$\frac{\text{상반기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 + \text{하반기 메타데이터등록·관리(현행화)율점수}}{2}$$

※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 = $\frac{\text{현행화된 테이블 수}(B)}{\text{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 수}(A)}$

- (A) 메타관리시스템 등록 대상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운영 중'**으로 등록된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DB 및 테이블 전체**

 ※ 패키지SW 및 네트워크·백업·보안 등 시스템SW는 해당 정보시스템 관련 정보와 제외유형을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되, 평가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 (B)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현행화하여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수

 ※ 기관메타관리시스템에서 테이블 현행화가 완료되었으나, 기관에서 중앙메타관리시스템으로 최종 전송처리 하지 않은 테이블은 '현행화된 테이블 수(B)'로 불인정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과 매핑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의 테이블 수는 실적에서 제외

[평가배점]

세부기준	배점	
	A기관(중앙, 광역)	**B기관**(중앙,광역 외)
현행화율 90% 이상	**8점**	**10점**
현행화율 80% 이상	**6.5점**	**8점**
현행화율 70% 이상	**5점**	**6점**
현행화율 60% 이상	**3.5점**	**4점**
현행화율 40% 이상	**2점**	**2점**
현행화율 40% 미만	**0점**	**0점**

※ **A기관** : 중앙, 광역 / **B기관** : 기초,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감점 기준	세부기준	배점
미등록 정보시스템 (DB) 비율 = $\frac{\text{미등록 정보시스템(DB) 수}}{\text{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	80% 이상	**-5점**
	60% 이상	**-4점**
	40% 이상	**-3점**
	20% 이상	**-2점**
	10% 이상	**-1점**

※ 최종 평가일(10월) 기준, 메타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정보시스템 및 DB가 있는 경우, 감점 적용

[유의사항]

① 표준배포시스템*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이 보유한 다른 정보시스템 및 DB와 동일하게 표준배포 시스템도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메타데이터를 등록·현행화하여야 함

* 새올행정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같이 동일·유사 행정업무를 위해 한 기관에서 개발하여 다수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배포·보급한 시스템이며, 이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 평가대상 정보시스템 및 DB에 미포함

② 메타데이터 등록·관리(현행화)율은 연 2회(6월, 10월) 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후 평균치를 기관의 평가점수로 적용함

- 6월에 시행되는 평가에서는 5월까지 메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평가대상에 포함하며, 9월까지 등록된 테이블은 10월 평가대상에 포함

③ 최종 평가일(10월) 기준, 메타관리시스템에 미등록한 정보시스템 및 DB정보가 있는 경우, 기관의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에서 감점 적용

-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 대비 '미등록된 정보시스템(DB) 수'의 비율에 대한 아래 기준에 따라 기관의 평가점수에서 감점 적용

측정기준	기준	점수
미등록 정보시스템(DB) 비율 = 미등록 정보시스템(DB) 수 / 등록 대상 정보시스템(DB) 수	80% 이상	-5점
	60% 이상	-4점
	40% 이상	-3점
	20% 이상	-2점
	10% 이상	-1점

< 산출예시① : 미등록 정보시스템이 없는 기관 >

정보시스템	DB 수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기관 평가점수
		등록 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등록 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A	1	10	10	10	8	(6+10) ÷ 2 = **8점** ☞ **감점 적용사항 없으므로 최종 8점**
B	2	40	20	40	40	
C	1	20	15	20	20	
D	1	10	8	10	9	
E	1	20	18	20	15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		71÷100=71% ⇒ **6점**		92÷100=92% ⇒ **10점**		

< 산출예시② : 미등록 정보시스템이 있는 기관 >

정보시스템	DB 수	상반기(6월)		하반기(10월)		기관 평가점수
		등록 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등록 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가	1	16	15	20	15	(8+10) ÷ 2 = **9점** ☞ **2점 감점하여 최종 7점**
나	1	20	15	18	18	
다	2	10	8	10	10	
라	2	25	22	25	25	
마	1	10	9	11	10	
바	2	미등록				
등록관리(현행화)율 점수		69÷81=85.1% ⇒ **8점**		78÷84=92.8% ⇒ **10점**		
미등록 정보시스템(DB) 비율				2÷9=22.2% ⇒ **-2점**		

[제출방법]

- 제 출 처 : 메타관리시스템
- 제출자료 : 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등록경로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메타데이터 > 메타데이터 등록
- **현행화율 확인 방법** : 기관메타관리시스템 → 메타데이터 →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관리 → DB현행화 결과보기

[참고사항]

- 개별메타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연계되어 전송된 경우만 현행화율 인정
- 등록 테이블 수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④-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지표

지표 정의	AI 모델 학습 및 공통서비스 개발 등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자료) 제공 실적 평가		
배점	**7점**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만 평가)	**방식**	**정량**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서 집계)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심재성 사무관(044-205-2290)**, NIA **김태원 수석(053-230-1634)**		

[평가방법]

[평가기준]

■ 행정·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AI 모델 학습과 AI 서비스 개발 등에 필요한 원천 데이터(자료)를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데이터(자료) 건수 평가

※ 각 기관이 2020년 이후에 직접 생산한 문서(자료)에 한하며, 제공 필요한 데이터의 유형 및 기준, 구체적인 실적·예외 인정 기준은 추후 공문(5월 예정)*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AI 학습에 필요한 기관 보유 원천데이터 범위 >

- 정부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AI 서비스의 범용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기관별 정책·제도·핵심사업과 관련된 대표 문서를 학습데이터로 활용
- 기관 내에서 작성되어 PC 등 개별 관리되는 문서를 포함하여 수집하고, 학습데이터 가공 편의를 위해 동일한 과업에 대한 연관 문서를 통합적으로 학습에 활용

[점수산정]

■ **평가산식 :** $\frac{\text{실적 건수}}{\text{목표 건수}} \times \text{배점}$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목표 건수 :** 정원 대비 목표치 설정 ※ 평가대상인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상이

* **기관 정원 : 2024년도 확정 정원**(본부(본청/본원/본사) 정원)

-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내 정원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상세 내용은 편람 47페이지 '정원 기준' 참고

1) 중앙행정기관

정원기준	목표 건수
~200명	1,800건
201~300명	3,000건
301~400명	4,200건
401~600명	6,000건
601~800명	8,300건
801~1,100명	12,000건
1,101명~	20,000건

2) 광역자치단체

정원기준	목표 건수
~1,300명	4,000건
1,301~1,400명	5,000건
1,501~2,000명	6,000건
2,001~3,000명	8,000건
3,001~4,000명	10,000건
4,001명~	12,000건

[제출방법]

■ 제 출 처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sharedata.insight.go.kr)

■ 제출자료 :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하므로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참고사항]

[N/A 처리]

o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행안부와 협의된 기관) → **해당 기관유형의 평균점수 적용**

[유의사항]

[데이터 분류기준]

o 범부처 공유 가능성, 데이터 수집 효율성, 학습 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기관별 민감성 데이터는 제외토록 분류안 설정

- **구체적인 분류안·기준** 등은 공문으로 **안내(5월 예정)**

< 분류안 예시 >

■ **(수집 대상)** ①종합계획·전략, ②사업계획·결과, ③요약보고서, ④지침·안내서, ⑤홍보자료, ⑥민원상담내역, ⑦행사계획·결과, ⑧회의록 ⑨기타

■ **(수집제외 대상)** ①내부 검토자료, ②단순 사무처리, ③일회성 업무

[실적 인정기준]

o 각 분류에 해당하는 문서 파일 당 1건으로 인정하되, 데이터 다양성, 분류·예시 부합성, 문서 직접 생산여부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인정

- **구체적인 실적·예외 인정 기준** 등은 공문으로 **안내(5월 예정)**

< 인정기준 예시 >

■ 데이터 다양성 : 분류 항목별로 기관별 목표 건수의 최대 30%까지 인정, 기타 항목의 경우 10%까지 인정

■ 분류·예시 부합성: 샘플조사 등을 통해 현저하게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 문서 직접 생산여부: 보도자료 등 부처별 자료를 단순 취합하여 제출 시 불인정

○ 「④-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지표

지표 정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타기관에 가명정보로 제공하거나 합성데이터로 공유한 실적을 평가		
배점	**5점(가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장현석 주무관(044-205-2484)**, NIA **신용국 선임(053-230-1532)**		

[평가 방법]

[평가기준]

■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타 기관에 제공했거나 합성데이터 형태로 공유한 실적을 정량적으로 평가

< 관련 용어 설명 >

- (제공) 특정 대상이나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데이터 전달
- (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직무상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를 공공기관 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
- (가명정보)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하는 등 가명으로 처리하여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합성데이터) 원천데이터와 통계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가진 가상데이터

[점수산정] 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공유 **1건당 1점 가점 (최대 5점)**

■ 동일한 가명정보 제공 요청 건에 대해서 가명 처리된 **동일 데이터**를 여러 대상에게 제공하였더라도 **1건으로 처리**

■ 합성데이터는 **공동활용데이터 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유**한 건에 한해서 인정

[실적인정 기간] 2024.9.1. ~ 2025.9.30.

[제출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① 가명정보 제공,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첨부9]** 작성양식 참고)

② 공유실적 및 가명정보·합성데이터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공문, 포털, 이메일 등 ㉮공식적인 신청 증빙자료(가명정보 제공·이용 신청서 등)
- ㉯제공·공유 증빙자료
- ㉰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 결과서
- ㉱적정성 검토 또는 안정성·유용성 검증 최종 결과 보고한 공식 문서(내부 결재문서 등)

※ 증빙자료는 ㉮,㉯,㉰,㉱ 모두 제출해야 실적 인증(합성데이터는 ㉮ 생략 가능)

※ 증빙자료에는 신청 일자, 제공·공유 일자, 검토·검증 일자가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스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모든 증빙을 사례별 한 파일로 묶어 PDF 형태로 **1부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 제출기한 : **9월 30일까지 제출자료를** 평가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인정 기간('24.9.1. ~ '25.9.30.) 내의 실적이 아닌 경우

※ 공식 문서 내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어야만 인정

o 공식적인 문서(공문, 보고, 결재 등) 증빙이 없는 경우

o 보고서 작성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하는 경우

- 증빙자료만 제출한 경우, 증빙자료가 없거나 일부 누락된 경우*

* 예) ㉰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를 제출하였으나, ㉱결과 보고서가 없는 경우

- 4-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정성)과 중복 제출된 경우

[기타]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준수

5. 관리체계 영역

< 평가목적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관의 기반 구축 및 교육 참여 노력 평가

구분	지표구성	배점							방식
		중앙	광역	기초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기타공공	시도교육청	
공공데이터 제공	① 추진기반 조성	3	3	4	3	3	4	3	정량
	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4	4	6	4	4	6	4	
데이터 기반행정	① 추진기반 조성	3	3	6	3	6	6	6	
	② 기관장 추진 의지	2	2	2	2	2	2	2	

○ <공공데이터 제공> 「5-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지표

지표정의	공공데이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의 추진기반 조성 노력을 평가		
배점	**A기관 : 3점 / B기관 : 4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실적자료 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044-205-2476)**, NIA **김민규 책임(053-230-1547)**		
비고	①**[첨부10] 양식을** 기반으로 **작성 필수**(**pdf형태**), ②**증빙자료**는 **한 파일(pdf)로 제출**		

[세부기준]

번호	세부 평가항목	배 점		방식	제출방법
		A기관	B기관		
1	'25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제출 여부	1점	1점	정량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행안부 보유자료로 판단
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여부	2점	3점	정량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제출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 B기관 :** 기초, 기타공공기관

[5-①-1] '25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및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제출 여부 (배점1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구 분	배점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제출 여부	0.5점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제출 여부	0.5점

[제출방법] 별도 자료 제출 불필요 (※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실적 불인정 사례]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제출 양식(한글, 엑셀)을 하나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위기관에서 제출한 한글 양식의 [붙임] 시행계획 수립기관 목록 내 '제출 여부'로 평가

[5]-①-2]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여부(A기관 2점/B기관 3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1)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및 공표 여부 ([A기관] 1.5점 / [B기관] 2점)

※ 소속기관은 평가 제외

1. 기관 실적 제출 여부	배점 (A·B공통)	2. 성명 일치 여부*	배점	
			A기관	B기관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식자료	0.25점	- 제공책임관 성명 일치 여부	0.25점	0.5점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임명 공식자료	0.25점			
- 공공데이터포털內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등록 증빙자료	0.25점	- 실무담당자 성명 일치 여부	0.25점	0.5점
- 기관홈페이지內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등록 증빙자료	0.25점			

* 임명 공식자료, 공공데이터포털·기관홈페이지 內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성명이 일치하여야 함

(2)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공식 지정 여부 ([A기관] 0.5점 / [B기관] 1점)

- 직제시행규칙(중앙부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직제규정(그 외 기관) 등을 통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전담 부서 지정 여부를 평가

[제출방법]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에 아래 자료 제출

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보고서(**첨부10** 양식에 맞춰 PDF파일로 제출),

② 전담부서 공식 지정 관련 증빙자료(직제시행규칙,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평가방법]

[실적 불인정 사례]

(1)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및 공표 여부 관련

- "기관 홈페이지"에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성명이 누락 되어 있고, 추가 자료를 통해 제공책임관·실무담당자 이름의 일치여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기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담당자(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이름 없이 전화번호만 등록된 경우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실제 공공데이터 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행안부로 제출한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공문 외 내부 인사자료를 제출한 경우

(2)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공식 지정 여부 관련

- 기관의 공식문서에서 "공공데이터" 문구가 명시된 업무가 분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서 직제내용에 "공공데이터"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공공데이터 제공>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데이터 품질 등 관련 교육 수강 여부를 평가		
배점	**A기관 : 4점 / B기관 : 6점**	**방식**	**정량**
담당자	**(제공·운영)**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신동렬 주무관(044-205-2476)**, NIA **김민규 책임(053-230-1547)** **(품질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김혜윤 주무관(044-205-2490)**, NIA **권석원 연구위원(053-230-1525)**		

[세부기준]

번 호	세부 평가항목	배점		방식	제출방법
		A기관	B기관		
1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교육 이수	2점	3점	정량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온오프라인 교육 이수 여부 집계 결과로 판단
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수	2점	3점	정량	

[5-②-1]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교육 이수 (배점 [A기관] 2점, [B기관] 3점)

■ **평가방법**

구분	내용
교육 대상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이수 기준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권역별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이수
점수 산정	전원이 교육 이수 시 2점(B기관은 3점), 전원 또는 일부 인원이 교육 미이수 시 0점 부여

[5-②-2]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이수 (배점 [A기관] 2점, [B기관] 3점)

■ **평가방법**

구분	내용
교육 대상	① 목록등록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②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내 평가대상 DB업무담당자
이수 기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권역별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이수 ▸ ① (실무담당자) **전원**이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전체과정 이수** ▸ ② (DB업무담당자) **전원**이 순회교육 또는 온라인 실적반영교육 **전체과정 이수**
점수 산정	상기 이수기준(①, ②)을 모두 충족 시 2점(B기관 3점), 하나만 충족 시 1점(B기관 1.5점) 부여, 교육 미이수 시 0점 부여

참고사항 (5-②-1, 5-②-2 공통)

■ 교육 관련 세부사항은 6월 중으로 공문 및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예정

■ 중앙행정기관은 소속기관 실무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

※ 평가대상 DB업무담당자는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소속기관 담당자도 교육 이수 대상에 포함

■ 본 지표평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교육 이외의 교육이수 실적은 인정되지 않음

○ <데이터기반행정> 「5-① 추진기반 조성」 지표

지표 정의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의 추진기반 조성 노력을 평가		
배점	A기관 : 3점 / B기관 : 6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허준 주무관(044-205-2475)** ,NIA **김소영 수석 (053-230-1939)**		

5-①-1, 5-①-2 데이터기반행정(배점 [A기관] 3점, [B기관] 6점)

[세부지표]

번호	세부지표명	방식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	정량	2점	5점
2	'25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	정량	1점	1점

※ **A기관 :** 중앙, 광역, 공기업·준정부 / **B기관** : 기초, , 지방공기업, 기타공공기관, 시도교육청

5-①-1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조직·인력 운영 여부(배점 [A기관] 2점, [B기관] 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기준	배점	
	A기관	B기관
(1)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및 운영	1점	2점
(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전담부서 공식 지정 - 직제시행규칙(중앙부처),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지자체), 직제규정(그 외 기관) 등을 통해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전담 부서 지정 여부 평가	0.5점	1.5점
(3)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 운영 - 전담부서 내 책임관을 제외한 1인이상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자 운영 여부 평가	0.5점	1.5점

※ 위 사항의 증빙은 **[첨부11]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기관 직인 날인 필수)'** 제출로 갈음

[실적인정 기간] 2024.9.1. ~ 2025.9.30.

[제출 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
 ※ 데이터기반행정 전체 정량지표의 실적 확인을 위해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부서 직제 및 담당자 업무분장에 '데이터기반행정'이라고 명시되지 않고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 관리, 데이터 운영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

※ '부서명'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포함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부서 직제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함

o 전담부서를 내부규정 내에 명확히 정의하지 않은 경우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관리하는 부서, 기관장이 정한 부서 등 모호한 표현이거나, 기관장이 결재한 내부결재 문서, 내부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조직도 등으로 증빙한 경우

5-①-2 '25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제출 여부(배점1점)

[평가 방법]

[평가기준]

■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시행계획 작성기한까지 기관별 '25년 시행계획(한글·엑셀서식*)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공문 제출 여부

* 양식에 맞춰 완성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만 인정

[제출 방법] 별도 자료제출 불필요

■ 기관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자료로 평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 상위 기관에서 취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공문을 제출함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제출 양식(한글, 엑셀)을 하나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상위기관에서 제출한 한글 양식의 [붙임] 시행계획 수립기관 목록 내 '제출 여부'로 평가

○ <데이터기반행정> 「5-② 기관장의 추진 의지」 지표

지표 정의	기관장 주재 보고회, 토론회, 점검회의, 행사 등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장의 주도적 역할, 리더십, 추진 노력 등을 평가		
배점	**2점**	**방식**	**정량** (평가시스템에 자료제출)
담당자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허준 주무관(044-205-2475)** ,NIA **김소영 수석 (053-230-1939)**		

[평가방법]

[평가기준]

■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기관장이 주재하고 참여하는 보고회, 토론회, 점검회의, 언론기고 및 인터뷰 등의 실적

[평가배점]

실적	점수
2회 이상	2점
1회	1점
실적없음	0점

[실적인정 기간] 2024.9.1. ~ 2025.9.30.

[제출 방법]

■ 제 출 처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평가시스템)

■ 제출자료 :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 및 증빙

※ 내부결재 등 공식문서를 통해 회의(행사)내용과 기관장 참석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언론보도 및 인터뷰의 경우 내용을 발췌한 자료도 함께 제출

■ 등록경로 : 공공데이터포털 통합로그인(all.data.go.kr) → 기관시스템 연계 → 품질·표준관리 통합시스템 → 데이터기반행정평가

[참고사항]

[주요 불인정 사례]

o 실적 내용이 데이터기반행정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기관장이 회의 관련 결재만 시행하고 미참여

o 내부결재 문서 미제출 및 기관장의 참여 여부가 확인 불가능한 회의

o 서면으로 회의, 보고, 점검 등을 진행한 경우

첨부1 2025년 평가대상 기관 목록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중앙 행정 기관 (47개)	부 (19개)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부업무 평가법
	처·청 (22개)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가유산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6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광역 자치단체 (17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기초 자치단체 (226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김해시,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양산시, 의령군, 진주시, 창녕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포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금정구,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울산광역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옹진군, 중구 **(전라남도)**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광양시,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기초 자치단체 (226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익산시, 임실군, 장수군,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충청남도)** 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정부업무 평가법
공공기관 (378개)	시장형 공기업 (14개)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산업부)** ㈜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준시장형 공기업 (17개)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 **(산업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2개)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5개)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기부)** (재)우체국금융개발원,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8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45개)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243개)	**(국조실)**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한국잡월드,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기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8개)**	기타공공기관 (243개)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재단법인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립항공박물관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단법인축산환경관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체부)**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재단법인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훈부)** 88관광개발(주), 독립기념관 **(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단법인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재단법인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8개)**	기타공공기관 (240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엠씨에스주식회사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기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식회사공영홈쇼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주)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해수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안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관유형	기관명		비고
공공기관 (378개)		**(기상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기후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산림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재외동포청)** 재외동포협력센터 **(통계청)** (재)한국통계정보원 **(특허청)**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 공기업 (47개)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도시철도, 대전교통공사 **(도시개발공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공사·공단)**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환경시설공사·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전시설,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지방공기업법
시도 교육청 (17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 행정법

첨부2 **〔지표1-②〕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보고서 양식**

〔기관명〕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지표1-②〕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 누락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미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식자료, 사진, 캡쳐 등 임의로 수정이 안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1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 ('25.10.31. 기준)

※ *'25.10.31. 기준('24.9월 이전 포함), 기관에서 개방한 AI 친화 ·고가치 데이터 일체 작성*

※ *우선순위가 높은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개방시점과 무관)*

우선순위	분야*	목록명	형태	개방시점	개방URL
①	*(하단 참고)*	*00000 데이터*	*□ 정형 □ 비정형*	*2024.10.20.*	
②	…	…	…	*2021.9.11.*	
③	…	…	…		
④	…	…	…		

** 분야 : 국토관리, 교통물류, 환경기상, 산업고용,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건강, 공공행정, 과학기술, 재난안전,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법률, 재정금융, 통일외교안보 등*

2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개방 계획 ('25.11월 이후)

※ *기관에서 보유한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중 미개방 데이터의 개방 계획을 작성*

※ *우선순위가 높은 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작성(개방시점과 무관)*

우선순위	분야*	목록명	형태	개방시점 (예정)
①	*(하단 참고)*	*00000 데이터*	*□ 정형 □ 비정형*	*2026.11월*
②	…	…	…	*2027년*
③	…	…	…	

** 분야 : 국토관리, 교통물류, 환경기상, 산업고용, 보건의료, 농축수산, 식품건강, 공공행정, 과학기술, 재난안전,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법률, 재정금융, 통일외교안보 등*

3 AI 친화 · 고가치 데이터 설명

※ "1 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실적"에서 작성한 목록 중 실적기간('24.9.1.~'25.10.31.) 내 **대표사례(1건)**를 작성하고, 아래 양식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을 작성

목록명		**형태**	□ 정형 □ 비정형
개방URL		**개방시점**	실적기간('24.9.1.~'25.10.31.) 내의 실적만 작성
주요내용	• 데이터 컬럼명, 데이터 축적 기간, 지역적 분포, 수집 목적, 활용 대상 등 데이터 관련 상세 내용 작성		

고수요·고가치성	• 해당 데이터가 민간의 수요 혹은 사회적 가치가 높음을 뒷받침하는 설명 작성 - 수요조사 과정, 분석, 선별과정 등 대해 잘 드러나도록 작성(증빙자료 필수) • AI 친화적 데이터인 경우, AI 서비스에서의 필요성(또는 수요 여부)을 추가 작성 • 맑은고딕 10p. - 맑은고딕 10p. ※ 중고딕 8p.

AI 친화성	• AI 친화적 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AI 친화적 데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작성칸 삭제 • AI 친화적 데이터가 갖춰야할 특징(시계열, 완결성, 신뢰성, 범용성 등)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설명 작성

특 징	여 부	설 명
시계열	O / X	데이터(목록)가 어떠한 부분에서 해당 특징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설명
완결성	O / X	데이터(목록)가 어떠한 부분에서 해당 특징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설명
신뢰성	O / X	데이터(목록)가 어떠한 부분에서 해당 특징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설명
범용성	O / X	데이터(목록)가 어떠한 부분에서 해당 특징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설명
기타 (자체 작성)	O / X	데이터(목록)가 어떠한 부분에서 해당 특징을 포함하는지 자세히 설명

※특징
- **(시계열)** AI 모델이 패턴 인식·학습하기에 **충분한 기간**의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
- **(완결성)** 지역·성별·연령 등 일부 집단의 내용이 아닌 **전국 단위 등 골고루 확보**된 데이터
- **(신뢰성)**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확하고 일관**된 데이터
- **(범용성)** **특정 기업(서비스)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는 형태**로 정제·전처리·가공된 데이터

활용성	• 지역·사회현안 해결사례, 민간서비스로 개발된 사례, 향후 예상되는 활용 사례, 파급효과 등 데이터의 활용성을 정량적·정성적으로 작성

첨부3 **〔지표1-④〕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보고서 양식**

〔기관명〕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 〔지표1-④〕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양식를 준용하여 **10장 이내 작성(각 기준별 페이지수 제한은 없음)**

※ 양식 내 모든 항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 누락시 점수 차감 혹은 실적 미인정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성한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식자료, 사진, 캡쳐 등 임의로 수정이 안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1-④-2] 공공데이터 민간·공공 활용 우수성과

■ **앱·웹 서비스일 경우**

서비스명	*앱일 경우 어플리케이션명 작성 (ios or 안드로이드)*	**서비스URL**	
운영주체		**실적일자**	
활용 데이터명		**활용데이터 URL**	

서비스 개요	• *앱/웹 서비스 전체에 대한 개요 작성* • *맑은고딕 10p.* - *맑은고딕 10p.*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서비스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개요 작성*
서비스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서비스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파급 효과	**정량**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정량효과*
	정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정성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서비스의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지식재산(논문)일 경우 (※ 논문 파일 제출 필수)

논문명		학술지정보 (제목, 볼륨, 호수)	
저자정보 (이름, 소속)		승인·출판일자*	*(완료) 00년 0월 0일* *(출판) 00년 0월 0일*
활용 데이터명		활용데이터 URL	

논문 개요	• *논문 전체에 대한 개요 작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논문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개요 작성*
논문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활용성	• *논문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논문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논문 승인 및 출판일자 중 한 개 이상이 실적 인정기간 내 일자이면 실적으로 인정*

■ 지식재산(특허)일 경우 (※ 특허증 사본 제출 필수)

특허명		특허번호	
발명자정보 (이름, 소속)		출원·등록일자*	*(출원) 00년 0월 0일* *(등록) 00년 0월 0일*
활용 데이터명		활용데이터 URL	

특허 개요	• *특허 전체에 대한 개요 작성*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특허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개요 작성*
특허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활용성	• *특허를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특허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출원 및 등록일자 중 한 개 이상이 실적 인정기간 내 일자이면 실적으로 인정*

■ 기타일 경우

기타명		기타증빙 (URL 등)	*URL이 없을시 원본 제출*
개발인정보 (이름, 소속)		실적일자	
활용 데이터명		활용데이터 URL	

기타 개요	• *해당 내용은*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기타 개요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에 대한 개요 작성*
기타의 우수성·필요성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부분의 우수성 및 필요성 작성*
활용성	• *논문을 통해 기대되는 파급효과*
기관 지원 노력	• *기관 데이터가 활용된 기타 추진을 위한 기관의 지원 노력*

※ *기타 실적의 증명(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필수), 실적자의 소속(추진기관 확인을 위해 필수), 실적일자, 활용데이터 등 필수 내용을 포함하여 성격에 맞게 양식을 일부 수정 가능*

[1-④-3]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 제출 개요 >

연번	추진실적명	수행 시기	증빙 페이지
1			
2			
3			
4			
5			

※ *아래 표의 양식을 준용하여 기관별 최대 5개의 사례 제출*

실적①	*추진실적명*		
수행시기		증빙 페이지	
추진 필요성 (추진배경)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관에서 해당 지원노력을 추진한 배경 기술*		
추진 내용	*국민·기업이 기관에서 개방 중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다방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기관의 노력 제시*		
핵심 성과	*상기 기재한 기관 지원 노력을 바탕으로 나타난 기관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성과 제시*		

첨부4 **(지표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작성양식**

(기관명)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지표1-⑤)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는 ①②③④ 순서에 맞춰 **건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파일명 1-5-연번-기관명-데이터명.pdf), 여러 건일 경우 여러 PDF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1-5-기관명.zip)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①공식적인 신청 증빙, ②제공·개방 증빙,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서, ④적정성검토 및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 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 압축파일 1부

□ 가명정보, 합성데이터 제공·개방 목록

연번	구분	데이터명	신청일자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	제공·개방 일자
1	*가명, 합성*	*수도권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 데이터*	*2024-09-01*	*2025-07-30*	*2025-09-01*
2					
3					
4					
5					
총계(건수)			**총 00 건**	**가명정보 00건**	**합성데이터 00건**

※ "데이터명"은 반드시 제공(개방)한 시스템에서 등록한 데이터명과 동일하게 작성

* '가명정보'는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 '합성데이터'는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 작성

첨부5 **〔지표3-①-2〕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작성양식**

〔기관명〕 분석결과의 정책활용 노력 및 성과 보고서 〔지표3-①-2〕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방법) 각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일련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해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여 **10장 이내**로 작성
(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처,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유의사항) 작성된 내용은 모두 실적인정 기간('24.9.1~'25.10.31) 내에 수행한 내용이어야 함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1 개요

☞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을 위한 기관내 조직과 역할에 대한 소개*

☞ *기관 내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의사결정, 행정·대미 서비스 개선 등 업무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주요 활동과 결과 등에 대한 소개*

○

-

2 정책활용 주요성과

☞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룩한 **핵심적인 정책활용 성과**에 대하여 주제의 발굴, 기획, 분석 수행, 정책 활용,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의 구성과 해당 결과물들에 대해 기술하고, 3-1-1지표에서 제출한 실적을 포함하여 주요 분석 과제 **1~2개에 대해서는 아래의 구성 예시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

○

-

<구성 예시>

□ 과제명 :

□ 추진배경 및 목적

○

-

□ 데이터 분석

○ 활용 데이터

연번	데이터명	형식	내용	출처	수집기간
1	*고용동향*	*xlsx*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노동부*	*2022*
2	*구매협의정보*	*hwp*	*구매협의제목, 유형 등*	*조달청*	*2022*

○ 분석기간 :

○ 분석기법 :

○ 분석내용 및 결과 :

□ 정책활용 성과/기대효과

○ 활용기간 :

○ 활용내용 :

○ 활용성과(또는 기대효과) :

3 운영 및 개선 방안

☞ *데이터 분석과 정책활용 결과물의* ***내외부 확산 방안****, 분석모델을 지속 활용하기 위한* ***유지관리 방안****, 데이터 및 모델 업데이트/고도화 방안, 내외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신규 분석주제의 발굴과 기획 추진시 고려사항 및 개선방안 등 해당항목에 대해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기술*

○

-

첨부6 **〔지표3-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보고서(지표3-③-2)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분량) 아래 서식을 준용하여 실적별 **5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처,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추진목록

연번	유형*	추진실적명	추진기간
1			
2			
3			

※ ①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 또는 ② 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에 대한 유형에 맞게 작성하되, 유형 구분 없이 기관의 대표적 사례를 최대 3건 선별하여 작성

※ 실적인정 기간 내 구축·도입의 구체적 계획(예산, 추진내용, 일정 등)이 수립된 경우에도 작성 가능

□ 추진실적

※ 아래 작성 항목 및 표의 양식을 준용하여 기관별 최대 3건의 실적 제출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 구축·운영	*o AI를 활용한 시스템(서비스)의 구축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관련 법령 근거 또는 법령 개정·정비* *o 민간 또는 자체 LLM 도입·활용, 서비스에 활용하는 내외부 데이터* *o AI 도입·활용 결과에 대한 수혜자(국민, 업무담당자 등)의 만족도나 효과성* *o 공공부문 확산을 위해 타 시스템(서비스)과 연계, 제공 서비스의 안내·공유* *o 구축, 고도화,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예산확보와 계획수립 등*
기관 행정업무 내 AI 활용	*o 보고서 초안 작성, 번역, 기초자료 조사·분석 등 기관 내부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 *o 효과적인 업무 활용을 위한 가이드 안내, 이용현황 확인, 활용 대표사례 선정·공유 등 체계적 운영* *o 내부데이터(자료)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보안 규정·가이드를 준수*

실적①	*추진실적명(추진목록과 동일하게 작성)*		
추진기간		증빙 페이지	

추진배경 및 목적	o - - ※

추진대상	*대국민 / 행정·공공기관(업무담당자, 일반사용자) / 기관 내부 직원*

추진내용	o - - ※
추진성과 (또는 기대효과)	o - - ※
향후계획	o - - ※

첨부7 **〔지표3-③-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고 노력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제고 노력 보고서〔지표3-③-3〕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분량) 아래 서식을 준용하여 실적별 **5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증빙자료는 공식 계획 및 결과보고서, 내부결재 문서, 사진, 캡처, 보도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보고서 파일 1부,
2. 다수의 증빙자료를 하나로 묶은 PDF 파일 1부

□ 추진목록

연번	유형*	추진실적명	추진기간	증빙 페이지
1				
2				
3				
4				
5				

* 역량진단 결과 활용,기반조성,문화조성 및 성과확산, 전문인력 양성, 기타 중 해당유형으로 작성 (유형은 평가의 편의를 위한 구분으로 유형별 제한 건 수는 없음)

□ 추진실적

※ 아래 표의 양식을 준용하여 기관별 최대 5개의 실적제출

실적①	***추진실적명***		
추진기간		**증빙 페이지**	

추진배경 및 목적	o -

추진대상	
추진내용	o - - ※ o
추진성과 **(또는 기대효과)**	

첨부8 **〔지표4-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보고서 〔지표4-②〕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는 계획, 사진, 캡처 자료 등으로 정확한 날짜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증빙자료는 **건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파일명 4-2-연번-기관명-과제.pdf),여러 건일 경우 여러 PDF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4-2-기관명.zip)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킹 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 (실적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압축파일) 1부

개요	배경 및 목적	*공유데이터 발굴·생성·공유의 배경 및 목적 등*
	공유데이터 설명	*공유데이터의 명칭 및 설명, 데이터 주요 내용 및 활용 가능한 분야 등*
발굴·제공 노력	공유데이터 발굴	*행정·공공기관에서 이용.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한 노력과 추진 성과를 작성* *- 타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데이터 발굴을 위한 활동(설문, 연구용역, 자체분석 등), 기관 내 보유DB별 공유여건에 대한 실태·현황 조사 및 분석 여부 등 공유데이터 발굴 노력* *※ 증빙자료에서의 활동과 발굴된 공유데이터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공유데이터 제공	*공유데이터 제공 기관이 공유데이터 공유·활용 과정에서 수요 기관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활동 및 추진 성과 등*
활용사례 및 기대효과	제공데이터 활용사례	*제공한 공유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실제 행정서비스가 개선된 사례*
	제공데이터 활용 기대효과 및 계획	*제공한 공유데이터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등*

첨부9 **[지표4-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보고서 작성양식**

[기관명]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보고서 [지표4-⑥]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 분량) 아래 목차를 준용하여 **2장 이내 작성**(증빙자료*는 분량 제한 없음)

-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증빙자료는 ①②③④ 순서에 맞춰 **건별 1개**의 PDF파일로 병합(파일명 4-6-연번-기관명-데이터명.pdf)
 ※ 여러 건일 경우 여러 PDF파일을 한 개의 압축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파일명 4-6-기관명.zip)
- 증빙자료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을 경우 마킹처리 등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

①공식적인 신청 증빙, ②제공·공유 증빙, ③가명정보 적정성 최종 검토 결과서 또는 합성데이터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서, ④적정성검토 및 안전성·유용성 검증 결과를 보고한 공식 문서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 (파일 구성) 1. 아래의 실적보고서 파일 1부
2. 증빙자료(압축파일) 1부

□ 가명정보, 합성데이터 제공 · 공유 목록

번호	구분	작성항목	세부 내용	비고
1	가명, / 합성	데이터명	*oo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	
		배경 및 목적	*oo시 대중교통 노선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개편방안 마련*	
		처리항목	*카드번호, 회원ID, 성명, 연결계좌 은행*	
		요청 및 이용기관	*oo시 시*	
		신청일자	*2024-12-01*	
		적정성 검토 완료일자/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자	*2025-02-10*	*가명정보는 적정성 검토 완료일, 합성데이터는 안전성 및 유용성 검증일을 작성*
		제공·공유일자	*2025-02-20*	
2				
3				
4				
5				
총계(건수)		**총 00건**	**가명정보 00건 / 합성데이터 00건**	

※ "데이터명"은 반드시 제공(공유)한 시스템에서 등록한 데이터명과 동일하게 작성

첨부10 **〔지표5-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보고서 양식**

〔기관명〕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노력 〔지표5-①〕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실적 등록) 본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평가시스템에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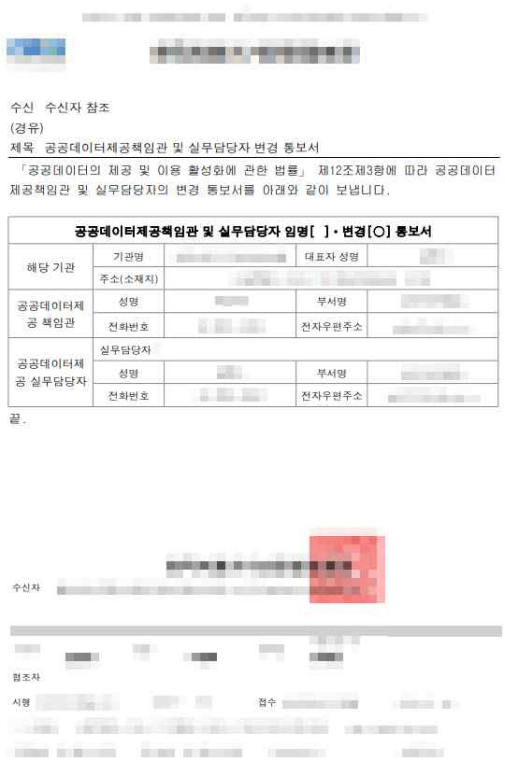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인력 및 조직 운영]

■ 공공데이터 담당자 이름 및 직책

구 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이 름	*홍 길 동*	*임 꺽 정*
직 책	*과 장*	*대 리*
기관홈페이지 담당자등록 URL	*www.abc.go.kr/####*	

■ 증빙내용 부분 캡쳐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식자료 캡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변경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변경[○] 통보서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끝.

수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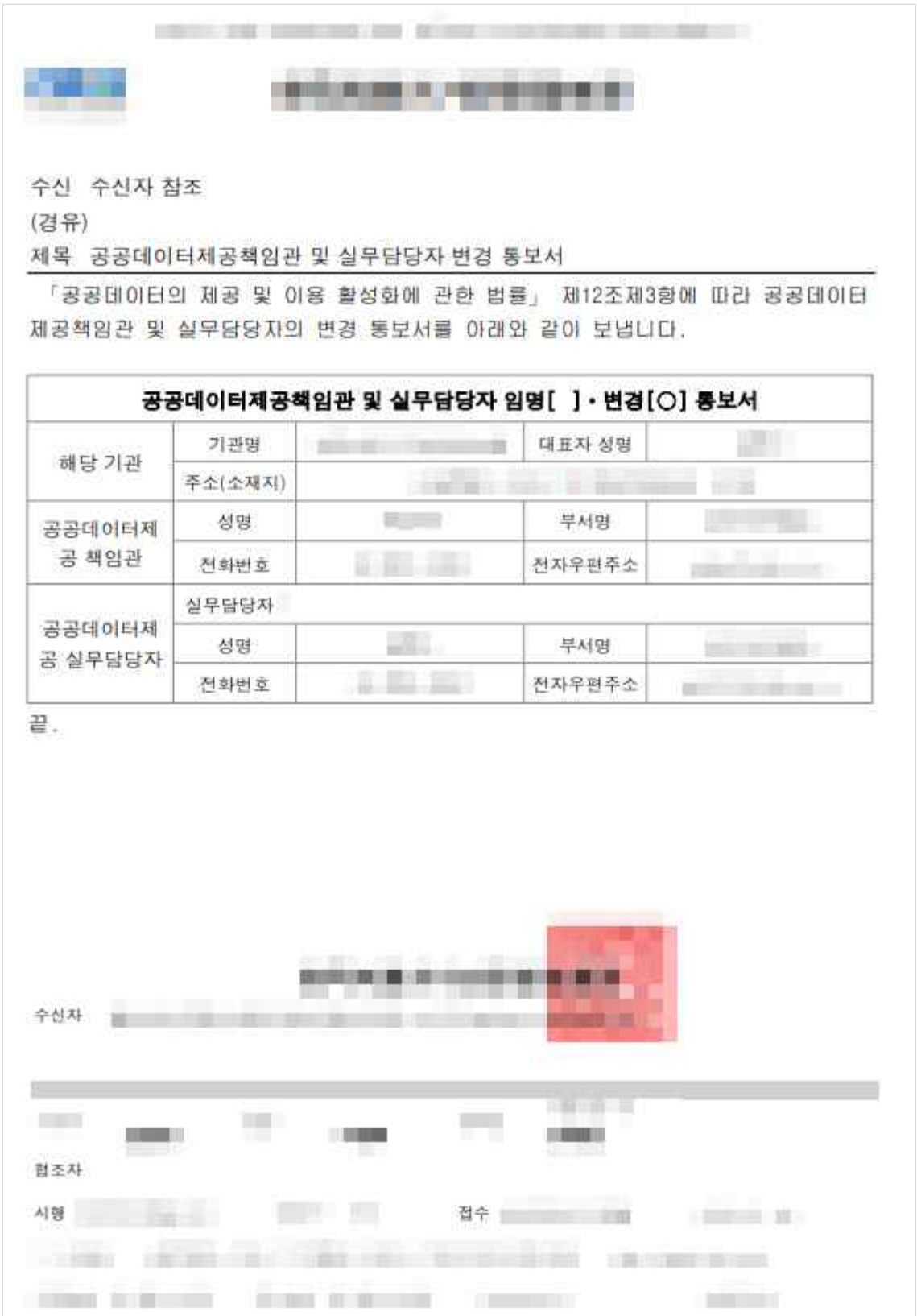
협조자

시행 접수

< 캡쳐 예시 >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임명 공식자료 캡쳐>

-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임명 공식자료 캡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변경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변경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임명[] · 변경[○] 통보서				
해당 기관	기관명		대표자 성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끝.

수신자

협조자

시행 접수

< 캡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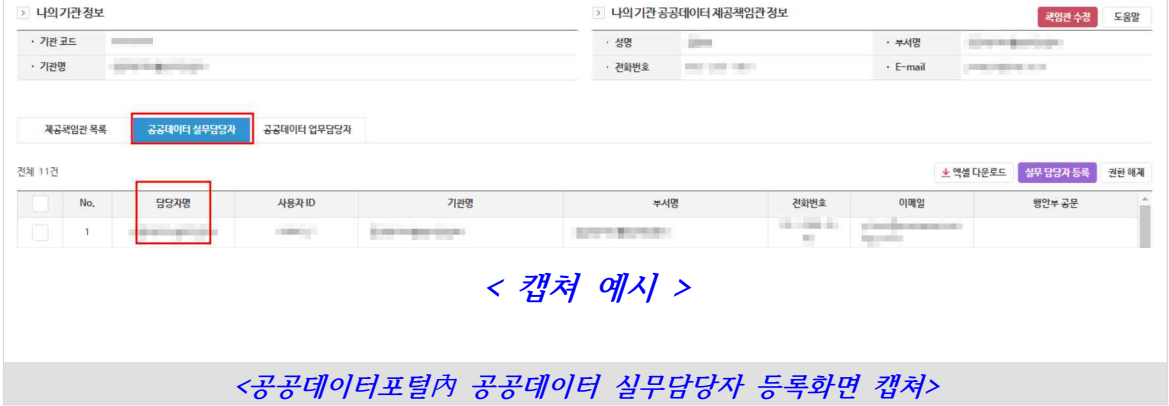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임명 공식자료 캡쳐>

■ 공공데이터포털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록 캡쳐



< 캡쳐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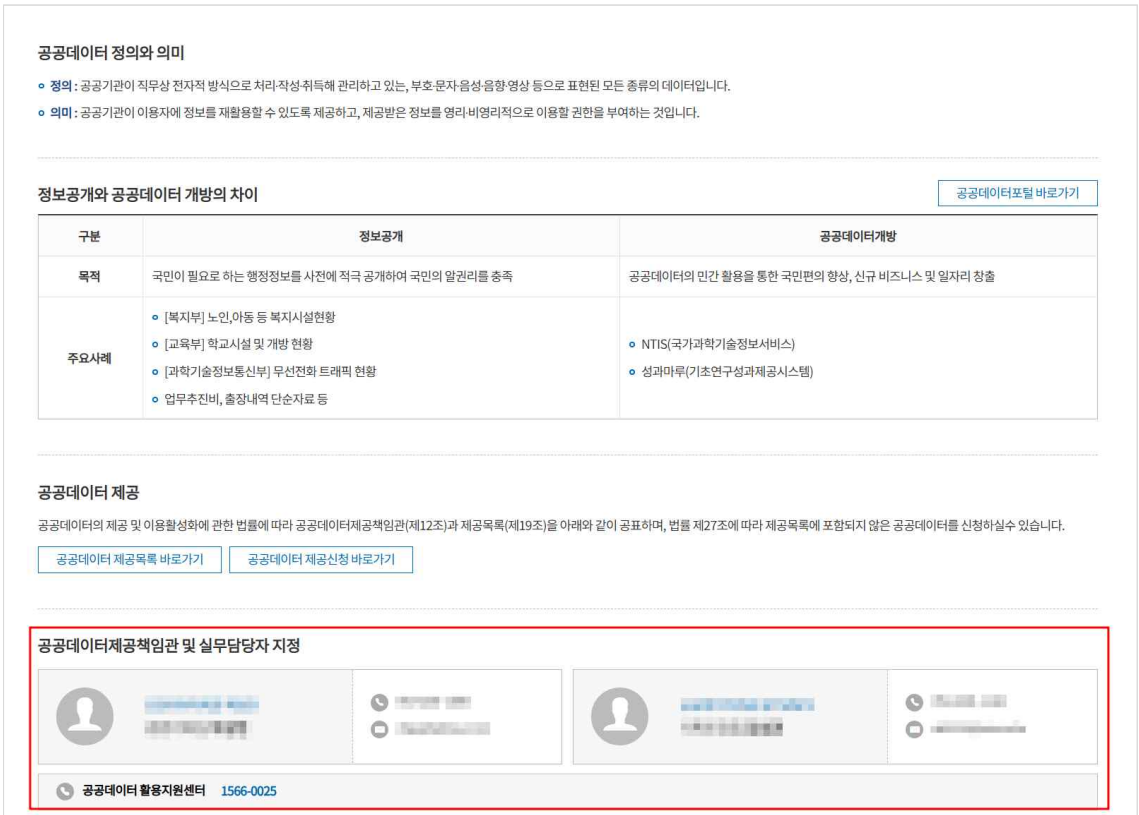
<공공데이터포털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등록화면 캡쳐>



< 캡쳐 예시 >

<공공데이터포털內 공공데이터 실무담당자 등록화면 캡쳐>

■ 기관 홈페이지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록 캡쳐



공공데이터 정의와 의미

-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영리·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공공데이터 개방의 차이 —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목적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주요사례	∘ [복지부]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바로가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redacted]

공공데이터 활용지원센터 156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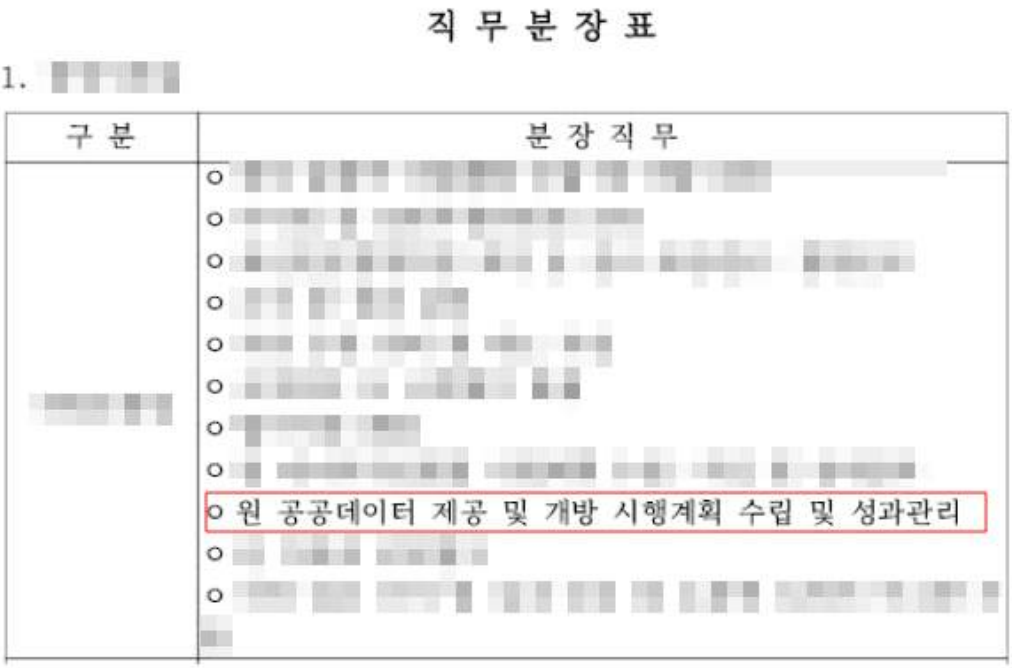
< 캡쳐 예시 >

<기관 홈페이지內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등록 캡쳐>

<[홈페이지 내 담당자 연락처만 적혀있는 경우] 추가 증빙자료>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공식 지정]

■ 공공데이터 전담부서 지정 공식자료 캡쳐



직 무 분 장 표

1. [redacted]

구 분	분 장 직 무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redacted] o 원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o [redacted] o [redacted]

< 캡쳐 예시 >

<00기관 직제규정 분장직무표>

첨부11 **〔지표5-①〕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 작성양식**

〔기관명〕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전체 실적 개요서 〔지표5-①〕

< 작성 참고사항 >

✓ 자료 제출 시 청색 글씨, 이탤릭체, 박스 등 작성 참고사항은 삭제하여 제출

✓ (작성방법)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개요서 내용의 증빙자료는 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개별 지표에 제출하므로 증빙 또는 증적자료 제출 불필요
- 필요에 따라 각 서식의 줄, 칸을 늘려서 작성

✓ (파일구성) 1. 아래 양식의 개요서 파일(엑셀*) 1부,

* 엑셀서식은 '품질표준괸리 통합시스템' 지표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제공 예정

2. 동일한 내용을 직인날인하여 스캔한 PDF 파일 1부

□ 분석 · 활용 영역

1. 데이터 분석 · 정책활용 실적 〔3-①-1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과제명 **	수행기간
1	*초등돌봄 수요 예측*	*(분석)* *(활용)*
2	*CCTV 최적 입지 분석*	*(분석)* *(활용)*
3	*교통 신호·통행 분석*	*(분석)* *(활용)*
총 00건		

*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칸에 체크하고 공란 또는 박스 삭제 후 제출(아래 모든 항목 동일)

** '범정부 데이터분석시스템'에 제출하여 승인된 과제만 작성(시스템에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2. AI · 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3-②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구 분	실적		
		교육대상(정원)*	교육 이수	정원대비 이수비율
1	전직원 대상 AI·데이터 교육 이수 실적 (3-②-1지표)	*00명*	*00명*	*00.0%*

<table>
<tr><th>번호</th><th>구 분</th><th>실적</th></tr>
<tr><td>2</td><td>AI·데이터분석 전문가 양성 실적 (3-②-2지표)</td><td>
<table>
<tr><th>구 분</th><th>양성실적</th></tr>
<tr><td>합계</td><td>00명</td></tr>
<tr><td>① AI·데이터 분석 자격증 취득자</td><td>00명</td></tr>
<tr><td>② 전문교육이수자</td><td>00명</td></tr>
</table>
</td></tr>
</table>

* 기관 정원 (본부(본청,본원) 정원)

※ 1인이 자격증 취득 및 교육이수 동시 충족 시 중복 인정 불가

3. 분석 · 활용 역량진단 (3-③-1 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진단방법	진단기간	진단대상	진단인원
행안부 역량진단 점검 도구 or 자체 점검		*00명*	*00명*

□ 공유 영역

1.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 이행도 (4-①-1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분	목표 테이블 건수	목록 수립 테이블 건수
2025년 공유데이터 구축		

2. 공유데이터 등록이행률 (4-①-2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분	목표 건수	등록 건수
2025년 등록대상		
2023~2024년 미등록 데이터		

3.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4-③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시스템명	구축기간(또는 예정기간)	예산 (백만원)

4.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4-④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상반기(5월)		하반기(9월)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등록대상 테이블 수	현행화 테이블 수

5.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4-⑤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분	목표 건수	등록 건수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 중앙, 광역만 해당

6.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가점) (4-⑥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정보명	신청기관 (또는 신청자)	신청목적	제공일
1				
2				
3				
4				
5				

□ 관리체계 영역

1.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5-①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 분	성명	직급	직위	임명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1급*	*본부장*	*' 23.6.1 ~ 현재*

2. 전담부서 지정(⑤-①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전담부서명	*경영기획실*
지정 근거	*직제시행규칙 제 3조 (조직 및 분장직무), 별표 2*
증적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된 화면이나 내부규정의 맨 앞장과 해당 조항 내용을 화면 캡쳐하고, 내용 확인이 쉽도록 하이라이트 처리* *(규정명, 제정일,시행일, 조항 내용이 모두 확인 가능하여야 함)*

3. 담당인력* 운영 (⑤-①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구 분	부서명	성명	직위	담당업무	연락처	이메일
대표 담당자						
담당자						

※ 담당인력은 전담부서 내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함
(전담부서가 미지정 된 기관의 경우 평가담당자 또는 본 개요서 작성자를 대표 담당자로 작성)

4. 기관장 추진의지 (⑤-②지표) :

실적 있음	√	실적 없음	

번호	추진명	추진일자
1		
2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우리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자체 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o 작성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o 확인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 또는 작성자의 소속 부서장으로 함*

o 제출일: 2025. . .

(기관명) (직인)

첨부12 지표별 문의처

□ [공공데이터 제공] 지표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문의 **(평가운영 전반,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이용 문의 등)**	1600-2187	asop@nia.or.kr

지표명		부서	전화번호
1-① 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률		헬프데스크	1533-5912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0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14
1-② AI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14
1-③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1-③-1~3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3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67
	1-③-4	행안부 공공서비스통합과	044-205-2726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17
	1-③-5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63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2-6191-2063
1-④ 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	1-④-1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0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14
	1-④-2,3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6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47
1-⑤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69
		NIA 공공지능데이터개방팀	053-230-1563
2-①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①-1,5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9
	2-①-2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790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5
	2-①-3,4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2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40
2-② 데이터 값 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9
2-③ 진단결과 조치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1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9
5-①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공공데이터 제공>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6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47
5-②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운영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6
		NIA 공공지능데이터기획팀	053-230-1547
	품질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0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25

□ [데이터기반행정] 지표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이메일
대표문의 (평가운영 전반,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이용 문의 등)		1600-2187	-
중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053-230-1597 053-230-1939	niada@nia.or.kr
지방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02-2031-9333 02-2031-9335	klidda@klid.or.kr
시스템문의	품질·표준관리통합시스템	1600-2187	-
	범정부데이터분석시스템	1588-3972	-
	공동활용데이터등록관리시스템	1588-4572	dydrnr10@nia.or.kr

지표명	부서	전화번호
③-① 데이터 분석·활용 실적 및 성과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044-205-2296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2
③-② AI·데이터기반행정 리터러시 및 교육 실적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044-205-2288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79
		053-230-1956
③-③-1 데이터 분석·활용역량 진단실시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044-205-2292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46
		053-230-1933
③-③-2 AI 도입활용 사례 및 추진 노력	행안부 지능정부기반과	044-205-3094
	NIA 정책기획팀	053-230-1652
③-③-3 활성화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5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7
④-① 공유데이터 구축 로드맵 수립이행 및 등록이행률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84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2
④-② 공유데이터 제공 노력 및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84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2
④-③ 기관공유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85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92
④-④ 메타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93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73
④-⑤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실적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분석과	044-205-2290
	NIA 디지털서비스팀	053-230-1634
④-⑥ 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공유 실적	행안부 공공데이터관리과	044-205-2484
	NIA 공공지능데이터인프라팀	053-230-1532
⑤-① 추진기반 조성	행안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	044-205-2475
	NIA 지능데이터기반행정팀	053-230-1597